

제433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17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3.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9)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6)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7)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7)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3)
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0)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4)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9)
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0)
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2)
1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5)
1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8)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5)
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2)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8)
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5)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05)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3)
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5)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68)
2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8)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9)
2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0)
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1)
2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2)
29.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3)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2)
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1)
3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1)
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2)
3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1)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2)
36.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8)
3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9)
3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4)
3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1)
4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8)
4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7)
4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2)
4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5)
4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1)
4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1)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7)
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7)
4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0)
4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4)
5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7)
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1)
52.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2)
53. 국방인공지능법안(유용원 의원·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5)
5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7)
5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5)

5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3)
5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0)
58.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8)
59.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9)
60.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2)
6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1)
6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5)
6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1)
6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2)
6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4)
66. 1980년 사복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15037)
67. 「故 광진수 중위 사망사건」 관련 군의 구조적 책임 규명 및 순직 재분류·제도개선
에 관한 청원(부승찬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52)
68. 업무보고
 - 가. 국방부
 - 나. 병무청
 - 다. 방위사업청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6
3.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9) 7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6)
..... 7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7) 7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7) 7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3) 7
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0) 7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4) 7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9) 7
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0) 7
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2) 7

1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5)	7
1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8)	7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5)	7
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2)	7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8)	7
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5)	7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05)	7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3)	8
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5)	8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68)	8
2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8)	8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9)	8
2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0)	8
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1) ..	8
2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2)	8
29.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3)	8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2)	8
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1)	8
3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1)	8
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2)	8
3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1)	8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2)	8
36.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8)	8
3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9)	8
3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4)	8
3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1)	8
4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8)	8
4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7)	8
4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2)	8
4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5)	8
4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1)	8

4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1)	8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7)	8
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7)	8
4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0)	8
4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4)	8
5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7) ...	8
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1)	8
52.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2)	8
53. 국방인공지능법안(유용원 의원·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5)	8
5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7)	8
5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5)	9
5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3)	9
5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0)	9
58.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8)	9
59.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9)	9
60.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2)	9
6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1)	9
6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5)	9
6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1)	9
6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2)	9
6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4)	9
66.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15037)	9
67. 「故 광진수 중위 사망사건」 관련 군의 구조적 책임 규명 및 순직 재분류·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부승찬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52)	9
68. 업무보고	11
가. 국방부	
나. 병무청	
다. 방위사업청	

(15시04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환 전문위원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서은철 행정실장께서 오셨습니다.

강만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국방위 활동 지원을 위해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및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한 후 국방부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시05분)

○위원장 성일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황명선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5시06분)

○위원장 성일종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회법 125조 6항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028년도 5월 29일까지 연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성일종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등 기관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수록한 자세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구체적인 문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9)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6)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7)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7)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3)
 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0)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4)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9)
 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0)
 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2)
 1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5)
 1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8)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5)
 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2)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8)
 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5)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05)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3)
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5)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68)
2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8)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9)
2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0)
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1)
2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2)
29.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3)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2)
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1)
3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1)
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2)
3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1)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2)
36.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8)
3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9)
3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4)
3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1)
4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8)
4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7)
4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2)
4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5)
4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1)
4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1)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7)
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7)
4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0)
4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4)
5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7)
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1)
52.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2)
53. 국방인공지능법안(유용원 의원·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5)
5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7)

5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5)
5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3)
5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0)
58.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8)
59.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9)
60.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2)
6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1)
6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5)
6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1)
6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2)
6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4)
66.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15037)
67. 「故 박진수 중위 사망사건」 관련 군의 구조적 책임 규명 및 순직 재분류·제도개선에 관한 청원(부승찬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52)

(15시07분)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7항까지 64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송수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방부 소관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 제1쪽부터 7쪽까지는 생략하고 제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유용원·부승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인공지능법안입니다.

이 제정법안은 인공지능의 개발·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법인 과기부 소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국방 분야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 분야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활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별도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인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 획득, 실증 및 안전성 검증, 국방 인공

지능 데이터의 관리 등은 그 내용상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국방인공지능위원회 및 정책 추진체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및 그 산하 국방·안보 분야 분과위원회 체계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은 주둔지 지역 농축수산물의 식재료 우선 납품 규정, 각 군부대의 영양사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축수산물 식재료 우선 납품이나 각 군 영양사 배치 등은 군 급식의 품질을 높여 군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 농축수산물의 식재료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식재료 조달원의 다양성 측면, 재료 비용 상승 가능성 및 식재료 수급안정 측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성일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성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전문위원 문성환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35항, 박선원 의원과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현재 연장복무로만 되어 있는 것을 연가 단축, 보수 감액, 연장 복무 등으로 제재처분을 다양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체감하는 불이익 유형을 다양화해서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성실한 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재 수단 다양화로 처분권자의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승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적·산업적 연관성이 매우 높고 현행 방위산업공제조합원의 상당수가 우주항공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9항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과 의사일정 제65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전장에서 소프트웨어 무기체계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개념을 도입하고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의 추진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원활한 개발과 지속적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의 특성을 고려한 신속·유연한 방식의 획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법안들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 신설, 시험평가 유연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68. 업무보고

가. 국방부

나. 병무청

다. 방위사업청

(15시13분)

○위원장 성일종 의사일정 제68항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규백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실무진에서는 보고를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라만상 모든 만물이 약동하는 계기입니다. 이런 계기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2026년 국방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계엄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바탕으로 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이어 왔습니다. 2026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군대 재건의 분수령이자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을 포함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로드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중대한 해입니다.

현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상호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역에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외파병 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강화된 대북 감시·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서 현지에 체류하던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겠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목표로 26년 국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26년 국방 운영 중점과제와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국민과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보고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알겠습니다.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결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의 임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련된 군정, 군령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합니다.

3쪽입니다.

국방 조직 및 정원입니다.

국방부는 1개의 차관보, 3개의 실, 20개의 국·관, 90개의 과·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26년 정원을 기준으로 공무원 및 군무원 5만 명을 포함하여 총 55만 명입니다.

4쪽입니다.

최근 안보정세 평가입니다.

먼저 주변국 정세로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서, 국방전략서를 통해 국익 최우선 기조를 지속 유지하며 대중 전략적 우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내 군사적 긴장 고조와 안보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 증강과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지도 체제 강화 및 군사력 현대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대미 전략적 압박과 정치, 군사, 외교력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종전협상을 지속하며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북한은 9차 당대회를 통해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유지하며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어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군사 중심의 협력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중국과는 교류 협력을 통한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기조를 발표하고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장기 집권 기반 구축과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으로 핵무력의 양적·질적 고도화와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를 제시하며 핵·재래식 병진 노선을 공식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 국방정책 방향입니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육성을 목표로 여섯 가지 국방 운영 중점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국방 운영 중점을 인쇄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 국방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국방 현안입니다.

중동 상황 관련 대응부터 25년 방산수출 성과 및 26년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동 상황 관련 대응입니다.

현재 중동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중동 전역에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해외파병 부대는 강화된 방호태세를 유지 중이며 개인 파병자를 포함하여 현재 피해 상황은 없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 중이며 매일 안정성 평가 및 부대와 개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을 위해 영공 폐쇄 및 민항기 확보가 제한된 중동국가로 KC-330 1대를 투입하여 재외국민 204명과 외국인 7명, 총 211명의 안전한 귀국을 도운 사막의 빛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재외국민들의 무사 귀국과 파병 부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며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9차 당대회 평가 및 대응입니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공개한 핵무력 강화와 첨단 무기개발 등 국방 분야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제1의 적대국, 남북국경선 요새화로 표현하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재강조하고 한국의 완전 붕괴 언급 등 대남 적대 의도를 표출하였습니다. 또한 핵보유국 지위 제도화와 핵무력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첨단 장비 개발과 정치사상 강화 등 무형 전력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의 강화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억제능력 확보 및 한미 핵협의그룹의 협력을 내실화하여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다양한 유형의 도발에 대비하여 대화력전 수행 체계를 강화하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 및 대드론 체계 전력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대북 억제력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입니다.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여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하겠습니다. 한미 공동평가에 전군의 노력을 집중하여 한미가 합의한 수준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우리 군 주도 연합방위체제 완전성 제고를 위해 중합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FS(연합연습) 간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하고 연내 상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입니다.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미국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 협상 및 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건조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칙과 건조 계획, 비확산 관련 입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의 국가적 노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핵잠 획득 간 일관된 의사결정과 책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IAEA와 안전 조치 관련 협의를 추진하는 등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5년 방산수출 성과 및 26년 추진 방향입니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5년 방산수출 성과는 폴란드 K-2 전차 2차 및 천무 3차 이행계약과 FA-50 필리핀 수출 등 수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하였고 국방부장관의 현지 방문과 고위급이 참석하는 국방행사 간 외교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페루와 포괄적 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폴란드와 현지화·공동생산 협력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가능한 중장기 방산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26년 방산수출 추진 방향은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외교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추가하여 체계적인 수출 지원 제도도 마련하여 지속적인 방산수출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결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영역에 접목하여 전방위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방위역량을 구비하겠습니다. 또한 군인들의 직업 안정성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와 국민,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국방부 업무보고 중에 지금 방산수출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천무를 팔 때 노르웨이에 수출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우리가 원래 300km 이상밖에 못 했다고요. 이것을 사우디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1000km까지 해제해 달라고 당시의 안보실장, 김선호 국방부차관, 국정원장, 외교부장관까지 전화를 해서 푼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랬더니 이번에 노르웨이가 우리가 푼 걸 보고 그걸 사 간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아이티 콜리션(IT coalition) 같은 경우도 거기 걸려 있는데…… 저 뒤에 국장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에스토니아나 이런 데 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속에 그런 부분들을 넣으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래야 우리가 방산물자를 푸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무래도 방산수출은 업체와 국방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의원 외교 할 때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그런 제도의 틀을 우리 국회가 해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홍소영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오늘 2026년도 업무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을 통한 군복무 부적합자 사전 선별과 데이터 분석 기반의 과학적 병역면탈 단속, 심리취약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등 병무행정의 신뢰 제고와 청년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병무청은 지능형 군 입영 추천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기반의 병무행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병역면탈 범죄의 다양화·지능화에 대응한 과학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예비군 행정업무 병무청 일원화 또 청년세대의 선호를 반영한 입영제도 개선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를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고 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병무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기획조정관 김인환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기획조정관입니다.

병무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 업무입니다.

9쪽 병역판정검사입니다.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 가능 여부를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판정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첨단 의료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한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키오스크 기반 얼굴 및 신분증 대조 등 수검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국어 심리검사 확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고려한 맞춤형 검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0쪽 현역병 충원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각 군과 협업하여 군별·시기별·특기별로 현역병을 균형 충원하고 모집병 선발방법 간소화 등 선발체계를 개선하여 청년세대 입영준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입영정보 제공과 청년 선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사회복무요원 소집·관리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 배치와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무기관 배치로 공익성을 제고하고 4대 중독예방, 자산관리 등 교육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 부실 우려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집중관리하고 향후 전 자적 출퇴근 관리시스템 도입 등 복무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산업지원인력 편입·관리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위주로 인력을 배정하고 근로환경 우수업체를 지정업체로 선정하는 등 안정적 복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현장 실태조사 확대, 전문인력을 활용한 근로권익 교육 등 실태조사 강화 및 권익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병력동원 소집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적소 특기자 등 정예자원 지정과 퇴역간부 등 예비군 자원 확보로 병력동원 태세를 확립하고 수송사고 예방활동으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동원훈련 소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 지자체 병무담당자의 전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 대체역 심사·소집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법률, 인권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대면조사 확대로 공정한 편입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복무관리와 함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여건 개선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주요 현안입니다.

17쪽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입니다.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 활용 등 과학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특사경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불건전 정보의 신속한 색출·단속으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면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단속 시스템 고도화 등 특사경 과학수사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현역병 모집체계 개선입니다.

각 군 모집병 선발 시 고교 출결과 면접평가를 폐지하여 모집병 지원자의 편의를 제고

하고 향후 해·공군·해병대의 일반병 지원자의 입영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무작위 선발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예비군 행정업무 일원화 추진입니다.

동원훈련 유형에 따라 병무청과 군이 별도 수행하고 있는 동원훈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ی겠습니다. 이를 위해 병무청 일원화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제도 운영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2027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업무를 전환해 가겠습니다.

21쪽 맺음말입니다.

병무청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병역의무자 관리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인력 충원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 구현과 병역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병오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한 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 선도함을 진수하고 킬체인 핵심전력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K-2 전차 2차 폴란드 수출 등을 통해 15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며 수출 흐름을 다시 반등 국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우선 확보 및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획득체계 및 국방 R&D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방위사업청 개청 20주년을 맞아 방위사업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하고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R&D 혁신을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군 핵심전력 강화와 산업 파급효과까지 동시에 실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방산 생태계의 참여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없애겠습니다.

셋째, 방산수출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고 주요 권역별 수요에 맞춘 수출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한경수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수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한경수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및 구매하여 적기에 소요군에 공급하는 방위력개선 사업, 국방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국방 R&D, 안정적 조달시장 조성 등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방위사업청 예산 현황입니다.

26년 방위력개선비는 총 19조 9653억 원으로 국방 R&D 예산 5조 8396억 원, 무기체계 구매와 양산 예산 13조 3471억 원,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을 위한 예산 778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가 위탁한 군수품 조달 예산 4조 9458억 원을 포함하여 26년 방위사업청 총 집행규모는 24조 9111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4관 3국 3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연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두고 있습니다. 청의 총 인원은 1596명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R&D 혁신을 통한 기술주권 확보입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으로 군위성통신체계-Ⅲ 등 198개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형 3축체계 확보와 병행하여 유무인 복합체계, 우주전력 등 첨단전력 확보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우주·항공,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첨단기술 분야 인프라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첨단소요 도입, 임차·구독형 획득 절차 마련 등 전주기 획득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탄탄한 공급망과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 기반 구축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공급망 DB 구축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비축 확대, 공급망 사업자 지원 등을 통해 방산 공급망을 안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급망 위험이 큰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확대하고 개발된 국산 부품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도록 하여 무기체계 부품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 전주기 집중 육성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방산 진입에 필요한 기술·인프라·컨설팅을 지원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개발품에 대한 군 실증을 지원하고 우수한 첨단분야 기술 등을 보유한 경우 연구개발 우선 참여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한 경우 전용 트랙을 통해 개발·시험·인증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 방위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개발 부품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겠으며 업체 간 과당 경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여 원가 우대, 절충교역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산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지원에 재투자하는 환류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섯째, K-방산 글로벌 수출·협력 강화입니다.

미국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 유럽 NATO와의 협력 강화 등 권역별 수요에 맞춘 전략 모델을 통해 정부 주도 방산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방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정부 주도 산업협력 패키지 마련, 절충교역 가치상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방산수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권역별 방산수출 중점국에 방산협력단을 설치하여 수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법률안 등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하는 위원 있음)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2·3 내란 이전에 방첩사에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등 여러 가지를 작성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정황들이 있는 자료들을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불러 드릴 테니까 국방부에서는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방첩사에서 작성한 김병주 리스트 일체 그리고 방첩사에서 24년도 11월경에 작성한 중앙선관위 위원 정치성향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24년 11월경 작성된 여론조사기관 현황과 성향 분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목사와 관련된 자료가 2개 있는데 2024년 8월 달에 작성된 걸로 보이는 최재영 목사에게 적용할 범죄혐의 검토문건 작성, 그다음에 8월 달에 작성된 최재영 목사 주변 인물 분석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방첩사에서 불법 국정개입에 관계된 자료가 있는데 주호주대사 가용자 검토를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종섭 후임으로 심승섭 해군총장을 건의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대로 낙점이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군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방첩사에서 있었는데 2024년도 3월 13일 날 작성된 장군 인사 현안보고 이것은 블랙과 화이트리스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자료로 보이고요. 24년 3월 21일 날 전반기 장군 인사 참고자료 이것은 화이트리스트입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25일 날 인사가 단행되고 난 다음에 5월 3일 날 국가안보실의 장군 인사 결과보고, 동향들을 보고했던 자료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 5월 28일 하반기 장군 인사 최소화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고 장군 인사 보고서를 했고 실제 11월 달에 장군 인사가 최소로 됐던 자료들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로 보게 되면 12·3 내란은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저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하시고 박선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가 정말 오랜만에 열린 것 같아요. 아까 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올 들어서 처음 열렸는데 과연 올해 한 두 달 반 정도 지나는 시간 동안에 국방위 현안이 없었느냐 하면 정말 굼직굼직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만 앞으로는 자주 이러한 기회를 가져 가지고 장관님이 국방 현안에 대해서 보고도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하는 과정에서 현안들을 잘 챙겨 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국방부의 실무진들은, 장관께서 요즘에 해외 출장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일정을 잡으면 또 장관께서 외교적으로 일정이 메이드(made)가 돼서 그 외교 일정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면 결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위원회가 몇 차례 연기 조정이 되고 또 국방위의 다른 분들 일상적인 여러 가지 꼭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고 이래서 몇 번 연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실무진 쪽에서 늘상 행정실과 또 양 간사 방에 일정들을 좀 내주시면, 미리미리 공유를 해 주시면 회의를 잡기가 조금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임종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방위가 수시로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일정에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오랜만에 열리는 국방위 회의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자료 중에서 8페이지 미국의 확장억제 협력 내실화 그리고 체계적·안정적·능동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형 3축체계의 고도화 그리고 19페이지에 전작권 전환, 20페이지에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 이 건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들께서 협의를 해서,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깊이 있게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

그동안에 내란죄 하면 상당히 경기들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2월 19일 지귀연조차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무기징역을 받았고 윤

석열은 그렇게 회피하던, 제가 보기에는 사실 악어의 눈물이라고 봅니다만 사과성 발언까지 했지요. 상임위원장께서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무죄라고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국방, 대한민국 살리기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인지.

내란이라고 하면 윤 어게인 외치면서 김현태 같은 친구가 제대로 구속도 안 돼 가지고 전한길하고 정치행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혹시 상임위원장이 봐줘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란죄의 성립 유죄판결이 난 지금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란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 국방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결정적인 하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장을 말해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의견은 마음껏 말씀하십시오.

지귀연 판사가 2월 19일에 여러 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낸 게 있습니다. 우리 당이나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과 국방부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 국방위원회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 간의 전쟁에 있어서 4~6주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는데 한 절반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호르무즈에 대한 우리 해군 파병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주무적으로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고 또 그 요청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국민들께 보고할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보고를 간단하게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미국으로부터 파병 요청에 대해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공식 요청이 없었으면, 지금 SNS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던 말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삼팔선에, 군사분계선에 와 가지고 ‘내가 간다, 김정은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SNS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SNS에 그 메시지를 남긴 것은 저희들은 그것을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미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일중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질의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이번 중동 상황으로, 저도 개인적인 민원을 받았습시다만 중동에 체류하던 재외국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사막의 빛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님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관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작전에 그리고 무사귀환에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외교부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합참과 공군 그리고 각 무관부, 대사, 여러 가지…… 또 11개 나라의 영공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허락을 받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아주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정부가 원팀으로 해서 사막의 빛을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 장관님께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합참 같은 경우도 거의 분 단위, 초 단위로 신경을 썼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 군은 우리 국민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부르면 달려간다는 365일 24시간 유비무환 태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국방위원장 질의도 있었습시다만 호르무즈 해협 참전과 관련해서 방금 답변하시기를 ‘어떤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5개국을 콕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한국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청래 위원 보도에서는 그렇게 보셨고.

그런데 아직 공식 요청은 없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공식 요청이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개를 다 할 수 없어도 여러 가지 플랜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아직 언론을 통해서만 봤습시다마는 일단 공식 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시다마는 그것은 아직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39km인데 실제로 배가 다니는 항로는 훨씬 더 좁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km 내외, 4.8~6.4km, 나머지는 알아서 배가 다닐 수 없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사막의 빛 작전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해 왔는데 실제로 우리 군이 만약에 그런 곳에 간다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소말리아 해협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우리 파병의 임무하고 또 현재 실질적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 호르무즈 해협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 이번에도 천공-II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가성비도 높고 가격도 3분의 1 가격이라서.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그다지 떼떽하고 내세울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방산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사청장님, 어쨌든 이번에 천공-II에 대한 효능성은 입증 좀 됐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기사들에서 저희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 아니, 청장님. 방위사업청장께서 기사 보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가격 면에서 상당히 가성비가 높다고 인정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가성비, 납기, 성능에 관한 우수성은 이미 많이 인정됐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장관님,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을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DMZ법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추진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정청래 위원** 그런데 유엔사에서 반대 입장을 펼쳐요.

그런데 비무장지대가 맞습니까? 이름은 비무장지대인데 사실상 엄청난 무장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생태환경·평화의 구역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좀 드나들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유엔사에서는 반대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우리 국방부가 일단 유엔사 측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청래 위원**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유엔사 측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청래 위원** 이게요 201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동조사 시에도 불허했다가 지연해서 허가한 바가 있고 또 2019년 태봉국 철원성터 남측 지역 현지조사도 불허하고…… 사실상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는 이런 생태환경·평화 조성 사업을 계속해야 실제로 비무장지대가 이름에 걸맞게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부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유관부처끼리 잘 협력해서 DMZ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가 지금 73년째가 됐습니다. 세월도 변했고 환경도 변했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 여러 가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와대나 외교부에서도 ‘공식 요청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금 장관께서도 ‘공식 요청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식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뭘로 판단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공식 요청이라고 하면 문서 접수를 수발하든가 아니면 수발 전이라도 양국 장관끼리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포맷하게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 절차와 요청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종득 위원 이번 사안들을 보면 한미 간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좀 특이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3월 15일부터 해 가지고 죽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꼭 집어 가지고 5개 국가, 영국 프랑스 한국 중국 일본에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어서 2개 국가가 추가가 돼 가지고 요청을 했다는데 2개 국가가 어디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시다라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실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접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상황이 전개되고 나서 바로 콜비 차관한테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내용을 했습시다라는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오늘인가 조현 외교부장관하고 루비오 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여건이 형성되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겠나 하는데 아직은 없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오늘 자 문화일보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숫자까지 4만 5000이라고 잘못 이야기를 했던데, 지금 그걸 언급을 하면서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형태고 그 쿼테이션(quotation)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 열의의 수준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어디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글썽요, 그 5개 나라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고 요구가 없었다는 말하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큰 갭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는 SNS나 이런 것을 그 자체를 공식적인 요청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PPT 하나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교롭게도 3월 13일 날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20분간 만났지요. 계획에도 없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14일 날 사실 트럼프가 저걸 공개를 하거든요. 왜 계획에 없던 만남이, 그것도 바쁜 대통령과 관계가 이루어졌을까, 트럼프가 SNS에 올리 기 하루 전이었는 데 과연 그 자리에서 지금 총리께서 얘기하고 있는 김정은에 관한 이야기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된 적이 없어요, 우리 국내적으로?

○국방부장관 안규백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NSC도 한 번도 안 열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NSC는 매주 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NSC에서 3월 14일 트럼프가 SNS 올리고 난 다음부터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통 이슈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군을 파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의 문제점부터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NSC에서 논의된 사항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종득 위원 하기는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의는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NSC 회의 내용 자체를 여기에서 공개 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임종득 위원 그것은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위원님께서도 NSC에 근무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임종득 위원 그래서 그 정도는 다 확인해 주셨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한번 올려 보세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참여연대, 민주노총, 시민평화포럼이 입장을 내고 있지요. 이것 보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민주당의 입장이 명확했고 그때 당시에 여당이 국민의힘이었는데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라도 보내자 했을 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는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장관님의 입장은 뭡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파병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겁니까?

○임종득 위원 예.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부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익과 국민 안전 그리고 헌법

과 법률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지 이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우리 한국인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도에 의하면 상선하고 유조선 포함해 가지고 약 한 26척, 어떤 데는 40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원은 약 183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의 위해요소는 없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 상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되고 우리 상선이 아니고 외국 상선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사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가 있고 청해부대가 해적 퇴치 작전을 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여론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그 작전 자체가 해적 퇴치를 위한 경무장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실제 참전을 한다고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무기체계라든가 탄약의 배분도 준비가 훨씬 더 돼야 될 것 같고 안전 관련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국방부장관 안규백 대드론체계도 좀 미약하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사실 국민들은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항행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인상·폭등의 문제, 그게 경제에 미칠 우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큼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의 여러 가지 우려와 고민 또 깊은 생각을 잘 알겠습니다. 국방부도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과 고민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대신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장관님, 여기 대한민국에서 호르무즈까지 이지스함이 간다면 며칠 걸리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 14~1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그건 최대속도일 때인데, 그렇게 되면 엔진에 무리가 가고 군함에 무리가 가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한 25일 걸린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일반적으로 교대 임무는 약 25일로 잡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간다고 했을 때 국회 동의도 얻어야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당연히 이건 다른 차원이고, 다르기 때문에 헌법 60조 2항에 의거

해서 국회 동의 사항입니다.

○**한기호 위원** 소해정이 간다고 할 때 소해정은 얼마나 걸립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소해정은 좀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소해정은 자력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15kt 이하고 또 소형 함정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못 뛰어서 다른 배에 실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해정이 가는 것은, 우리 소해정도…… 지금 일본은 소해정을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점도 상당히, 이제 소해정도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할 때 장관님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러냐? 장관님이 후보자 시절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했어요, ‘지난 40여 년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익혔던 여러 가지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참 국방, 진정한 국방,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군심이 흐트러져 있고 또 군의 사기가 땅에 저하돼 있다. 저는 이 문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 이렇게 6월 27일 날 기자회견할 때 인터뷰했어요.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마음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정반대인 것으로 느끼는데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2·3 계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벌했는가 보십시오. 중징계한 인원이 35명, 그런데 이 중에서 25명은 항고를 했어요. 또 헌법준중 TF에서 수사 의뢰한 게 114명, 징계 의뢰한 게 48명…… 이렇게 많이 처벌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십니까? 진짜 진정으로 군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비상계엄에 관련된 인원들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느 사람들 처벌하고 수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군의 재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군인은 통상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된 것에 대한 수궁을 하고 처벌도 수궁합니다. 35명 중에 25명이 항고했다는 것은 수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몸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법의 결과가……

○**한기호 위원** 그것은 장관님 얘기고 피해자, 당하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도하게 한다, 파면하고 다 했으니까. 그게 파면까지 할 게 있습니까? 버스 탔다고 파면합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12·3……

○**한기호 위원** 아니, 지상군 전체를 지휘하는 지작사령관 지금 임무를 수행 못 하게 했어요. 해군총장은 지금 아웃시켜 버렸어요. 아니, 그 사람들 4성 장군 달아서 내려보낼 때 이것도 하나 검증 안 했습니까? 내려보내 놓고 그러고서 잘라 버려요? 해군총장……

그러면 똑바로 인사검증 못 한 것 아니에요, 장관님이?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당시에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12·3 계엄으로 군의 지휘부

가 장기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 지휘부가 아니고 장관님이 인사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이 당연히 인사 검증 책임이 있지요. 이렇게 해서 내보내 놓고 지금 잘라 가지고 해군총장 부재중이고 지작사령관 임무 다른 사람이 대리수행하고 있고 이렇게 만든 것도 장관님이 하신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계엄이라는 것이……

○**한기호 위원** 남한테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계엄이라는 것이 은밀성, 감출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객관적 조건으로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이 새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장관님이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라 놓고 지휘 공백을 만들어 놔요? 지금 해군이 호르무즈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해군총장도 없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군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현역군인 자리에 민간인으로 전부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영관장교, 장군, 소령들 이렇게 쪽 소령부터 돼 있습니다. 저렇게 없애면 대위에서 소령 진급할 자리 없어지고 중령으로 진급할 자리 없어지고 대령 진급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다음 슬라이드.

여기 마찬가지로요. 부사관들도 저렇게 없어요.

또 다음 슬라이드.

육해공군 총장을 포함해서 각 병과학교장까지 전부 민간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군인들 교육하는 병과학교장을 전부 민간인으로 바꾸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려고도 군을 사랑하신다고요?

자, 보세요. 김풍익 중령이 옛날 6·25전에 포병 교도대대 대대장 했어요. 이 사람이 교도대대장 하다가 그대로 포를 끌고 나가서 6·25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병의 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게 김풍익 중령이에요.

전시가 되면 전부 싸울 부대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 교장들을 다 민간인으로 바꿔요? 그러면 지금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려고 하는 사람들 진급 자리 다 없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예산을 절약했습니까? 군무원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다 봉급은 똑같아요. 왜 이렇게 군을 홀대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진급 자리 다 없애고, 그러고도 군을 사랑한다고 장관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을……

○**한기호 위원** 입으로만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행동은 저렇게 하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학교장 같은 경우는 현역군인은 보직관리 차원에서 재직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한기호 위원 아니, 짧고 긴 게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이야기를 좀 들어 보세요.

○한기호 위원 아니, 제 얘기도 들어 보세요! 무슨 장관님이……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야기를 들어 보시라니까요.

○한기호 위원 짧고 긴 게 아니고, 장군 자리를 없애 버려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질문을 하셨으면 이야기를 들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한기호 위원 뭐라고요?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한기호 위원 지금 와서 저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장군 자리 다 없애 놓고!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도 인내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질문하셨으면 말을 들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한기호 위원 지금 말이야 변명하는 거지. 말을 들어 볼 게 뭐 있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무슨 변명을 해요!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장관님은 그 자리를 국무위원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무위원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씀 안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억지 말씀 하시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답변자로 오셨잖아요. 여기 국회입니다. 좀 질의가 마음에 안 드셔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무게감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많고 이러기는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규백 장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학교장 같은 경우는 현역군인 같은 경우는 재임 기간이 짧아서 학생들 교육의 질과 발전에 일관성·체계성이 떨어집니다. 그 자리는 군무원이지만 주로 예비역 장군들이 많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많이 바꾸고 군무원으로 많이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보완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기호 위원 전 세계에 병과학교장을 민간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오기 전에 저것 때문에 ‘야, 뒤져 봐’,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병과학교장을 전부 다 민간인으로 바꿉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장관님, 연일 각종 이슈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3군 사관학교장이 임기가 6개월 밖에 안 돼요. 이것은 군에서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보장하는 민간인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국가안보, 군을 무너뜨린 데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아프지요. 하지만 단호해야 돼요. 인정에 휘둘러서는 국가안보는 지켜질 수도 없고요 또다시 권력에 의해서 사유화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관님께서 중심을 잡고 잘 가고 계시다,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요청에 대한 것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오지 마라’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반응을 보기 위해서 내가 7개국에다가 한번 떠본 거다’, ‘우리는 강한 군대다’.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강한 군대다. 타국의 군함이 필요 없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 보면 ‘I want to find out how they’ll react’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다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 좀 알아 두시면 좋겠고요.

슬라이드 잠깐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조선일보 기사예요, ‘한(韓) 방공자산 비었는데…… 북 초대형방사포 80여 대 생산’. 이것 대응 안 합니까? 가짜 뉴스잖아요. 국민의 안보불안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뭐가 방공자산이 비어 있어요? 이것 가짜 뉴스이고 대응해서 언중위 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PG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PG 내는 게 아니고요. 이것 단호해야 됩니다. 뭐가 비었어요?

그리고 미군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는 하지만 입출입과 관련해서도 통제를 합니까? 안 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부승찬 위원 미군 방공자산은 장관님께서 말씀했었어요, 약 80% 정도가 우리 한국 방공자산이고 나머지 한 20~25%가 미군 자산이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리고 미군 자산은 주로 미군기지, 미군시설을 보호합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런 것들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이해 안 되는데 ‘한(韓) 방공자산 비었는데……’, 한국이 무슨 방공자산이 비었어요. 이것 매국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대응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철저히 대응하고요 기사 분석을 해서, 제가 군사기밀 보호법 전문가인데 이것 걸 수 있으면 걸어요. 혼내 줘야 됩니다, 이런 언론은. 이것은 기사도 아니예요. 어떻게 군을 이렇게 왜곡·편파 시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것 언중위 보내십시오. 제가 대변인 할 때 이런 것 다 언중위 보냈어

요. 완전히 100%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 부분도 아마 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것 확실히 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되고요.

제가 전쟁에 대해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드려 보고 싶은데 전쟁에 대해서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이란 전쟁을 보시면 패턴이 나타나잖아요. 일단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전쟁이 끝나질 않으니까. 그다음에 전쟁 양상이 변화해요. 우리는 전통적인 전쟁,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격전 기반의 전쟁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핵이 얹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비대칭 소모전, 다시 얘기하면 비용 비대칭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실제적으로 비용분석을 한 것을 보니까 지난해 4월 14일 날 이란이—올해가 아니고 지난해입니다—드론과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대공방어에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든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8000억이에요. 이스라엘 국방비의 10분의 1을 하루 만에 썼어요. 그렇지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방어 성공의 패러독스가 나타나요. 우리는 대비를 잘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교훈적인 게 있잖아요. 도시화가 되고 4세대 전쟁은 결국은 전면전이 아닌 비대칭에 의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전쟁 양상의 변화 그다음에 이것에 따른 방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 개의 전쟁에서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3000만 원짜리 자폭드론을 쓰는데 자폭드론 한 대를 요격하는 데 60억 짜리 써요.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취약하다, 방어에 대해서 아직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작전 개념 그다음 방어개념을 다시 수립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50만 전사 양성해서 공격용 드론을 만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저가의 전파교란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가 공격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무기체계를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것도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빨리 반영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한 삼사일만 써 버리면 모든 게 동이 나 버리는 거예요, 비축탄부터 시작해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큰 세 개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삼아서 방어무기체계도 새로 지금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미측하고도 지금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 노력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승찬 위원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장관님, 우리 군은 국가와 국민을 소중하게 자기 목숨을 던져 가면서 지키는 그 숭고한 사명, 그것으로 버티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그것이 우리 군을 사랑하는 것이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당연합니다.

○황희 위원 그것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데 보면 팔구십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반국가행위와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색출해 가지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 국민과 프랑스 국민과 독일, 프랑스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포함해서 우리 군은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군을 사랑하는 방법은 제가 군 3법,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우리 군의 복지에 대해서 제2 창군, 이제는 우리 군이 무기 중심 체계에서 제2 창군 하는 마음으로 사람 중심, 우리 군인들 중심으로 뭔가를 좀 준비하고 마련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그 법안을 잘 통과시키고 우리 군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을 사랑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감사합니다.

○황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군용기 추락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F-16 전투기가 2020…… 뭐 그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이 년마다 한 번씩 해서 2건, 3건씩 추락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전투기 추락 사고가 11건, 22년부터 지금까지 총 11건 있었는데 그중에 F-16이 4건이나 있어요. 이것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올 하반기라든가 내년에 또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우리 공군의 전면적인 검열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자세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희 위원 장관님, 사고가 계속 같은 기종에서 반복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황희 위원 병무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미래 전투체계 구축이 병무청장님 소관일 것 같아서, 미래 전투체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 양성, 아까 보면 군 내 교육 프로그램 중에 대체복무, 여러 가지 종교적 문제라든가 다른 이유로 해서 군에 못 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미래 전투체계의 틀 안에 묶어서 뭔가 일반 사병들이 훈련받는 것 말고 사이버 전술체계라든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거기에 인력을 소집할 생각은 없을까요?

현재는 고려대학교에 과정이 하나 있고 기존에 있는 전문 인력이다 싶은 사람들을 차출해 가지고 할 텐데 앞으로 우리 군의 미래 전투체계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과 인재 양성을 한다면 그 인재들이 군 전역 이후에도 산업 인력 수요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예비군 소집할 때는 다시 계속 순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군 인력 자원을 소집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체계는 없어 보여요.

○병무청장 홍소영 지금 병역제도는 우리가 병역자원이 풍부하게 많았을 때의 병역제도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 시점에서 병역제도 전반에 대해서 병무청이랑 국방부랑 협력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복무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좀 축소하고 군의 병력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체복무 인력에 대한 군에서의 활용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국방부랑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희 위원** 장관님, 이제는 우리 군의 미래 전투체계를 위해서 이런 인력을 사회에서 이러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걸맞다고 차출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군 내에서 소화해서 교육을 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미래 전투체계를 위한 무기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기반부터 철저히 다지려면 우리 군이 그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병무청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군 자원들을 저희가 모집하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희 위원** 방사청장님, 우리가 소재·부품 이런 R&D를 별도로 하나요, 국산화를 위해서? 저희가 R&D 같은 데 보면 국산화 비율은 50% 밑이에요, 대부분 성공률은 80~90% 넘어 가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R&D 체계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수차례 지적하지만. 그런데 그 체계가 방사청만 또 쉽사리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인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스텔스 도료도 있고 고성능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갈 텐데 제가 상상컨대 이것은 분명히 외국에서 사 올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국내 기술이 있으면 국산품을 우선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요.

○**황희 위원** 현재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요구 성능이 지나치게 높을 때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리고 전력화 시기가 굉장히 짧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들은 있는데요.

○**황희 위원** 청장님, 예를 들어서 LIG라든가 대기업 한화 이런 데가 그런 것을 할 때 소재·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려면 R&D 자원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외국에서 사 버립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런 소재·부품이 강화될 수 있게 그것을 또 별도로 R&D로 잡고 연구하면 이게 또 산업 수요하고도 연결될 수 있게 산업부하고도 협업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서 의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장관님, 저는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 중에 몇 개 여쭙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용원 위원** 업무보고 내용 18쪽에 보면 600mm·240mm 방사포 증강 대비해서 장사정포 요격체계 전력화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북한군이 600mm 초대

형 방사포 12발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그런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LAMD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2029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빨라지고 있는데 LAMD 전력화 계획을 앞당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력화를 좀 앞당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몇 년 정도까지 그걸 앞당기시려고 하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1년 정도는 앞당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용원 위원 1년 정도? 그러면 2028년쯤까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28년경.

○유용원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전작권 관련해서 보면 올해 전작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FOC 검증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전작권은 IOC·FOC·FMC 3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FMC가 되면 2028년에는 전작권이 전환될 수도 있겠네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11월 달에 26년 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마침과 동시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x년을 정합니다. 그 x년을 정하면 그것이 바로 전작권 전환 해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 아무튼 현 정부 임기 내, 2030년까지 전환한다는 기본 목표는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전에……

○유용원 위원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가급적 조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빠르면 28년에도 할 수 있겠네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이 27년이 될지 28년이 될지, 26년에 x년을 정하기 때문에 금년 11월 달에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다음 쪽 20페이지에 핵잠수함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쭙겠는데, 핵잠 기본계획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만드실 계획인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핵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은 미측과 한 1년, 2년 안에 모든 조건을 다 마칠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국방위에서 범정부 사업단이 중요하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추진단은 어떤 규모로 어디 직속으로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사업단은 지금 국방부에 설치를 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약 한 150여 명 정도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관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국방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범부처……

○유용원 위원 외교부, 과기부, 환경부 다 연관이 되는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원자력위원회가 포함되고요.

○유용원 위원 물론 국방부와 장관님의 역량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청와대라든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설치돼야 사업단이 제대로 힘을 받고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에서 하고 책임기관을 우리 국방부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언제쯤까지 만드실 계획인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는 지금 거의 얼추 짜져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빠르면 상반기 중?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도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예,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하셨는데 장관님께서도 예를 들어 이지스함이라든지 소해함 전력이라든지 이렇게 새로 과병되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지금 아덴만 일원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미션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해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2020년에 보면 우리 청해부대가 작전 수역을 호르무즈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 상선 보호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해서 실행했었는데 일각에서는 그것을 준용해서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데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때는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국방위원장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 말씀을 선불리 드리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가능성의 옵션을 놓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장관님도 아시지만 그때는 미사일, 드론 이런 게 날아다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유용원 위원 지금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유용원 위원 지금은 사실 전시입니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청해부대를 옮겨야 될 경우라도 저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습시다만 대조영함의 역량이 원래 해적 소탕·퇴치를 주 임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다, 많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란이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요즘 모기 함대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소형 보트가 수백 척이 있는데 이런 수십 척이 벌떼 공격을 한다든지 드론이 벌떼 공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많이 부각이 안 돼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면 수상 드론, 수중 드론이 탐지도 어렵고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 부분도 상당히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대조영함을 그대로 보내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용원 위원 대조영함을 보내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만약에 보낸다면……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임무와 전력 이 상태에서 보내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용원 위원 지금 해군 쪽에 누가 와 계신가요?

○해군참모차장직무대리 이구성 해군참모차장직무대리 기참부장입니다.

○유용원 위원 보면 저도 그런 주장을 폈습시다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함정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야 된다면 이지스함이라든지 이런 상당한 무장을 갖춘 함정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지스함도 그대로 보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드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낸다면 이동 기간 삼사 주 플러스 준비기간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군참모차장직무대리 이구성 예, 위원님 말씀 정확하고 장비 상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정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용원 위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해군참모차장직무대리 이구성 지금 함정의 상태를 판단해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달 이상이 필요한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준비에만?

○해군참모차장직무대리 이구성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지금 2차 내란과 관련해서, 김건희와 관련해서 2차 종합 특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종합 특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내란 진상규명 TF를 만들어서 제가 위원장이고 박선원 위원이 간사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내란과 옷깃만 스쳐도 인사에 배제해야 된다,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장관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당연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실제 지휘관 재판부는 내란을 12월 1일 날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한 정황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내란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 좀 살펴봐서 반드시 2차 종합 특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방첩사의 김병주 리스트 있다는 것 보셨습니까?

슬라이드 한번 잡아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리스트 혹시 보셨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봤습니다.

○김병주 위원 리스트 보셨지요? 여기 보면 제가 8월 12일 날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때 이제 바로 계엄하겠다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때 작성이 된 걸로 보여요. 출력물이 8월 19일이더라고요. 그때 제 연고지인 예천 출신 6명, 강릉고 출신 3명 그리고 근무 연고자, 연합사 부사령관과 3군단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핵심 요원들에 대한 리스트 14명을 작성한 겁니다. 이것 보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방첩사에서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고강도 조사를 통해서 식별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 식별 잘한 거고요. 여기 분석서에 보면 제가 이 인원들에 대해서 ‘진급이나 보직에는 영향력을 끼친 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위 인원들과 서로 상호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해서 일부 인원들은 실제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또 배제를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특히 김봉수 합참차장은 합참차장 간 지 4개월 만인 11월 27일날 비상계엄 일주일 전에 전격 교체됐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닙니다. 51일 만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51일 만입니다.

○김병주 위원 51일 만에 단기간에 교체해 버렸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그냥 김봉수 합참차장은 차장이다 보니까 국방위에도 나왔고 저하고 자주 소통했으니까 바로 교체가 됐고요. 소장, 사단장, 두 명은 계엄과 관련 없는 부대에 있었는데 24개월 임무를 다 마쳤는데도 그해 후반기 인사에 그대로 유임을 시켰어요. 그리고 해군의 준장 한 명은 그다음 해 바로 11월 달에 전역 대기를 시켰다든가 이런 불이익이 있었으니까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천 출신 인원과 강릉고 출신은 제가 거의 모르는 인원이예요, 계급 차이도 많고. 그런데도 불이익이

됐을 확률이 있고요.

다음 보시지요.

방첩사가 24년 11월 6일 날—계엄 한 달 전이지요—중앙선관위 위원에 대한 정치 성향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체포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걸로 보이고 또 11월 6일날 여론조사기관 현황과 성향 분석을 만들어서 하고 나중에 여론조사꽃이 표적이 됐잖아요.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사전에 이런 걸 다 분석했던 거예요.

더 가관인 것은 최재영 목사에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최재영牧사는 김건희의 눈엣가시와 같은 분이셨는데 24년 8월 14일 날 최재영 목사에게 적용할 범죄 혐의 검토 문건을 작성했어요. 범죄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분석했더라고요. 민간인들에 대해서 이것 할 권한이 방첩사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불법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8월 22일 날 최재영 목사 주변 인물 분석이라는 보고서도 냈어요.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나오잖아요. 거기 체포 명단에 최재영 목사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또 방첩사가 국정 개입까지 했어요. 주호주대사로 가 있던 이종석 후임으로 4명의 후보자를 선정해서 1순위로 심승섭 해군총장을 건의하고 실제 이 인원을 채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는 대대적인 혁신과 해체 수준의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방첩사도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12·3 내란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저에게 좀 제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2차 종합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주호주대사로 심승섭 해군총장을 1순위로 한 것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국군통수권자에게 충성을 다했던 자다, 그리고 전역 후에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서 일했다 이런 이유로 1순위로 했더라고요, 호주대사로 적합성이 아니라.

그다음 보면 군도 12월 3일 날 계엄 전에 체계적으로 이미 군은 내란형 장군 인사를 한 거예요. 24년도 3월 13일 날 장군 인사 현안보고를 하는데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구분해서 긴급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3월 21일 날 전반기 장군 인사 참고자료라고 해서 화이트리스트를 하는데 어느 보직에는 누가 적합하고 이런 걸 쪽 보고를 하는데 4월 25일 날 장군 인사를 분석해 보니까 90%가 다 그대로 반영됐어요. 10%는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걸러진 거고요. 그리고 나서 5월 3일 날 국가안보실에 장군 인사 동향 보고를 해요, 실제 안보실에. 여기 안보실이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5월 28일에는 하반기 장군 인사를 최소로 계획해야 된다는 작성을 하고 하반기에는 계엄을 해야 되니까 최소 장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분만 주실래요?

○위원장 성일종 예, 더 드리십시오.

○**김병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더 가관인 것은 호남 리스트도 작성해요, 호남 인사의 리스트. 순천고 27명, 호천고 18명, 매산고 12명, 금성고 8명, 순천공고 2명, 광주인성고,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도 여러 개인데 제가 여기 언급을 못 했어요, 광주인성고는 확실히 기억나고요. 인성고는 아마 국방부장관 서욱이 나온 학교이고 이런 관련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는 이 인원들에 대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줬는지는 검토를 못 했어요, 명단을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이고.

장관님도, 이 인원들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이 주어졌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2차 종합 특검에서 수사가 돼야 되니까 관련 자료들을 국방부에서도 2차 종합 특검에 반드시 다시 한번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 사안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특검에 국방부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장관님, 사막의 빛 작전 성공,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을 증명해 준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의 빛이 왜 사막의 빛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데저트 샤인(desert shine) 사막의 빛이, 국민주권정부가 빛의 정부이듯이 사막의 어두운 데서 광명 같은 빛이 나타나서 우리 재외국민들을 조국의 품으로 편안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목적 뜻이 있었습니다.

○**황명선 위원** 바로 그게 이재명 정부, 우리 군의 국민의 정부, 국민의 군대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국가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특히 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내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사막의 빛 작전, 공군 시그너스를 투입해서 이 작전 204명을 포함한 211명을 사우디 리야드에서 무사히 구출한 작전은 굉장히 아주 훌륭했다라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번 작전은 최초의 작전인 것이 나라 대 나라, 단독 일 대 일 작전이 있었지만 인근 나라 네 개, 다섯 개 나라를……

○**황명선 위원** 11개의 영공을 지나가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2000km·800km 버스 타고 오고 24시간 걸어서 온 사람들……

○**황명선 위원** 그래서 단 하루 만에 또 서울공항까지 복귀를 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최초의……

○**황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 공군 장병들이 보여 준 치밀한 계획과 작전 수행능력이 전 세계 최강이다라는 것을 정말 이번에 보여 줬어요. 특히 작전통제단을 비롯한 수십 명의 요원분들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동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중환자실의 경력 간호장교들의 세심한 준비, 이게 바로 국민을 보호하는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군의 진면목을 저는 보여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 전 세계에 증명했어요. 아주 뿌듯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 이하 장관님 그리고 함께 참여한 군 관계자 모든 분들한테 그리고 외교부와 관계 기관, 정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아주 감사하다, 고맙다,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감사합니다.

유관 기관끼리 원팀을 이루어서, 우리 국방부는 김홍철 정책실장 또 합참 이런 데서 원팀을 이루어서 24시간 잠을 안 자고 야전상의를 깔고 자면서 국방부에서 그렇게 지휘했습니다.

○황명선 위원 지금 현지에 아직도 지금처럼 이렇게 구출해야 될 분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있습니다. 있는데, 재외국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하시라도 수송기를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여기에서 보니까 공군 시그너스 투입을 했어요. 이게 공중급유기더라고요, 공중급유기.

○국방부장관 안규백 공중급유기가 다목적으로 쓰입니다.

○황명선 위원 그렇지요.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증액 의결한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을 우리가 했는데요,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감사합니다.

○황명선 위원 계속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결국 파병과 관련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마는 트럼프는 26년 3월 14일과 3월 16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호위 작전 군함 파견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한국의 원유 수입 35%가 이곳을 통과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보여 줬으니 이제는 직접 참여하라’라는 논리도 펴고 있어요. 압박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실제로 다 많은 4만 5000명으로 언급하며 강도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2만 8500명 정도 주둔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황명선 위원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5~7개국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참여 약속 확보는 못 했더라는 보고입니다.

장관님, 국방부나 정부가 앞서 주신 말씀처럼 현재까지 공식적인 군사 지원 요청은 없었고 SNS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군의 해외파병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 2항에 의거해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헌법에 따라서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며 이는 국가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장관님, 만약 현시점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우리

군의 파병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가정을 전제로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선 위원** 특히 국민 여론과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 시민사회나 또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지금 벌써 밖에 나가서 이 파병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파병 문제는 국민도 장관께서 앞서 주신 것처럼 국익 관점에서 또 헌법과 법률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데 지금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략자산과 파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가의 대중동 관계, 대이란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말씀은 사실 자제해 주시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선 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현재 미군의 사드 전력이 중동으로 반출된 상태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해병대 전력이 중동으로 향한다라고 합니다. 해외 파병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주변 해군·공군 전력과 지휘, 정보자산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대북 대비태세의 여러 층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가정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봤다 그러는데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명선 위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익과 국민의 생명 보호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장관께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잘 알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장관님, 아까 김병주 위원께서 지속적으로 질의하신 내용 거기에 제 말도 언급했던 기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기무사가 해체되면서 안보지원사로 개편된 이후에는 그 당시에 예비역 관련한 자료들은, 이미 예비역은 민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 업무를 과거에 기무사는 했었지만 더 이상 못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방첩사가 돼서도 못 해야 되

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전역한 예비역들 그러니까 민간인들의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1차장한테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방첩사 1차장한테.

그래서 그걸 파기하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국방부에 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파기 못 한다고 하거든요. 이걸 엄연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료를 장관님께서 지시하셔야 방첩사에 있는 많은 존안된 자료들이 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일종의 민간인 사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관에 취임하고 일정 부분 보고를 받고 존안 자료를 없애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부는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모든 일체의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있던데 다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사실 예비역이 되면 그 순간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의 자료를 국방부든 방첩사든, 어느 정보기관이든 국가기관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파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선영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에 김정은이 집권하고 그동안에 세 차례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남전략이 크게 세 번 변했거든요. 2016년, 그러니까 취임하고 5년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주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공산화를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남북 간에 공산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였고요.

제8차 당대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국방력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강을 해서 남북한에 어떤 힘의 우위를 가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에 26년도 9차 당대회에서는 이러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의미도 없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서 통일 교류협력을 구조적으로 거부하겠다, 한민족 개념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난 3월 10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방공무기가 반출됐다—사드가—인정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600mm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했거든요.

PPT 보시면, 당일 날 김정은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420km 사정권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주게 할 것이고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다’. 사실 420km면 남한의 거의 대부분이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질의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주한미군 무기의 반출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한미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무기 반출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강선영 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전혀 다릅니다.

○강선영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PPT를 보십시오.

무기 반출을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북한이 개발한 600mm 방사포는 미군의 에이태컴스(ATACMS)보다 사거리가 100km가 깁니다. 그다음에 20~30초 단위로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KN-23에 대해서 여기 국방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발표해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목표에 의해서 딱 변칙 기동하는 다양한 전술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면 고도와 궤적이 다양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쓰면 우리 대응이 매우 어렵다.

대통령께서 방공무기 반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다양성과 치명성이 악화, 사거리도 길고 KN-23처럼 궤적이 다양한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 내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층체계의 KAMD와 미국의 MD 체계가 연동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보완성이 증대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형 KAMD에서는 천공-II와 PAC-3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개발 중입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미국의 MD는 사실상 반출된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북한의 김정은이 말한 것처럼 전술핵무기를 무더기로 쏘겠다고 겁박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그냥 말로만 걱정 마라 이렇게 하면 걱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잡는데요, 주한미군의 자산이 반출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씀을 하시고 기정사실화됐다고 그러는데 일부의 미세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주요 자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재차 확인해 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 포대는 이상 없이 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무기체계에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신 답을 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사드가 지금 한반도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주한미군 자산에 대해서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제한적인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사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위원님이 개인적인 판단을 하십시오.

○강선영 위원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방공무기 체계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부의 미세한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략자산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선영 위원 지금 방송에 다 나오고 그런 것들인데 장관님이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대북 방어태세도 모호해지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지금 미국의 자산 무기에 대해서 여기서 흑이다 백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산기지에서 전

투기가 실어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가테나항으로의 정기적인 항로인데 정기적인 항로를 오해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언론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으로 대신 대답을 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나 그 말씀을 해석하자면……

1분만 더 주십시오.

아무튼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한반도의 방어태세는 장관님 말씀이 현재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다면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당대회에서 통일 교류협력 구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DMZ 내 국경화 작업도 꽤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건 차치하고요. 앞서 정청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DMZ법 만들어서 유엔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DMZ(비무장지대)를 실제 비무장지대로서 유지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GP와 GOP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거기가 비무장지대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과 같은 성격의 평화선언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은 한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통일 교류협력 안 하겠다는데 왜 지속적으로 우리는 남북군사합의를 스스로 파기하겠다, DMZ법 만들어서 거기를 평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평화 선언하겠다, 실질적인 종전선언과 같은 걸 하겠다고 계속하고, 한미일 연합 연습도 지금 거의 축소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북한은 끊임 없이 무기체계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동포로 인정하지 않고 군사협력도 하지 않고 통일에 대해서 거부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이렇게 해서 또 한미 간에는 지속적으로 DMZ법 만들어서 마찰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안보정책, 국방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바늘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숨구멍을 찾아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강온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아무래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주 사드체제, 포대 큰 변동 없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제가 알기로도 사드체제, 2개의 배터리 문제없습니다.

그다음에 페트리어트도 일부 미사일 한두 발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핵심시설, 주한미군 기지나 우리 전쟁 지휘부나 용산을 비롯해서 핵심시설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태세에 변동이 없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지난 5년,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천공을 비롯해서 L-SAM, M-SAM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 그리고 배치계획이 순조롭게 계속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KAMD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사드를 비롯한 방어무기는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원 위원 다층방어의 기본 원리지요.

그리고 자꾸 국방부에서 왜 민간인을 채용하냐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한미군 2만 8500명 중에서 비전투요원, 논 컴배턴트(non combatant)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최하 20%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각 학교장을 다른 데로 보낸 것은 전방 부사단장 그리고 부군단장 직위를 대령급에서 장군급으로 다 격상을 시켰습니다. 창끝부대를 더 강화시킨 겁니다.

○박선원 위원 평소에는 무슨 50대 선배들까지 시니어 아미로 데려오자고 하는 분들이, 민간인들이 우리 군내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총력전 체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비를 하고 있는 장관에 대해서 그야말로 인신 모독적인 발언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리고 제가 장관 들어와서 장군 직위는 5명 더 늘렸습니다. 약화시킨 게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잘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 국가를 갔다 왔는데 적 규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군이 적이라고 부르느냐. 적이 적이 아닐 가능성, 즉 적대성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1%, 2%만 되더라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군이 적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 자신들은 위협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꾸 주적이다 어쩌다 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성숙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주요 항구입니다. 저기에서 석유를 우리가 수입해 들어오는 항구인데 저기 호르무즈 해협 왼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호르무즈 내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내측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기관에 확인한 결과 지금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는 다 정박 상태에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하면서 유조선에 기름을 채울 준비를 하고 있거나 채우고 있는 안정적인 상태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른쪽 부분, 오만만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유조선이 정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이란이든 미국이든 상대의 군사세력에 대해서 자극하지 않고 있고 뒤로 빠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 해군이 함정을 신속하게 보낸다고 해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은 사실 안전지대에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은 아까 유용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지스급을 보내야 됩니다. 유조선은 한 320m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지스급이

145~170m 되는데 두 척이 붙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지스급 두 척이 가 가지고 유조선 하나를 보호하는데 그 작전 성공의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비군사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적어도 이란이 이곳을 봉쇄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군 역시 하르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하는 외교적 방침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이지스라고 하는 것은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해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감시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식별·탐지 임무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지스함의 이러한 중복적·복합적 역량을 고려해 봤을 때 다들 말씀하셨지만 쉽사리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핵추진잠수함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유사 입장국들 있지 않습니까,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like minded country)라고 하는? 일본이 됐든 호주가 됐든 다른 나라들이 의외로 우리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워싱턴에 피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핵추진잠수함이 물론 군함에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핵연료라든지 리액터(reactor)라고 그러지요, 소형 원자력발전소 그런 것들은 다 추진체로 쓰는 것이지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핵물질을 거기서 뽑아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외교를 워싱턴에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좀 확신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합참의장이 안 오시고 했으니까요.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난 2월 28일 날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헤란을 때릴 때 사전에 통보받은 나라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미 정부의 군 그리고 안보 핵심 당국자들 가운데에서도 2월 28일 날 테헤란 때린다는 그 정보를 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CIA 핵심, ODNI 핵심 관계자들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동에서의 안보 상황, 정세가……

30초만 주세요.

매우 유동적인데 그런 속에서 장관께서 우리 군 지휘부와 함께 일단은 우리 안보를 철저히 지키고 있고 북의 어떠한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북이 갖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대칭 무기에 대해서 세계 어떤 나라에 비교해도 우리 자력으로 그리고 주한미군과 함께 영광과 우리 영토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 우리가 충분한—요새 유행하는 말로—스트라이크 미사일, 공격용 미사일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어용 미사일, 디펜시브 미사일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전시에도 충분히 생산해서 조달할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 점을 장관께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한 일주일 전에 발표한 거를 보면, 물론 21~25년 5년 동안은 우리가 방산수출이 8위인가로 나와 있지만 작년 단년도 한 해만 놓고 보면 세계 4위입니다. 모든 여러 가지 무기 체계나 자주국방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일본 아사히 신문을 보니까 일본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부대를 파견하는 검토에 착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 혹시 우리나라에 영향은 안 끼쳐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주변국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또 일본은 일본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관계없이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 향후 이 전쟁이 장기전에 돌입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러-우 전쟁을 유엔헌장을 위배한 행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현 중동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 등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유엔 조사단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유엔헌장을 위배했다 하는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에 대해서 유엔헌장을 위배했다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관께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군함을 파견하든 무슨 군사력 조치를, 파견을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가정을 전제로 하고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대미, 대중동 관계 여러 가지를 복합적 요소로 고려를 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께서는 이 전쟁에 대한 명백한 규정, 유엔헌장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좀 전에 강선영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600mm 방사포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쏘는데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가, 그 정확도가 100%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장관께서도 들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도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혹시 판단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강대식 위원 정확도.

○국방부장관 안규백 정확도?

○강대식 위원 예, 8발 쏘았는데 100%……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아직은, 관에서 발표하는 것은 약간 허구적인 사실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더 검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 발표를 한번 봤을 때는 ‘600mm 방사포 12문하고 2개의 포병 중대가 동원됐다’ 이

렇게 돼 있는데 이것 방사포를 운용할 병력까지 배치된 걸로 보입니까, 장관께서 생각하실 때?

○국방부장관 안규백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첨단 AI를 비롯한 우주 또 방사포까지 해서 상당한 기술력을 원조받고 지원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도 측면에서는 한 번 더 면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정확도 시험의 성공을 가정해서 장관께서 혹시 다음 단계를 예측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강대식 위원 그래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한되면 안 해도 됩니다.

지난해 8월경에 본 의원실에 보고가, 북한이 현재 600mm 방사포 발사 차량 40여 기 이상을 보유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 2월에는 총 80여 기를 생산했다고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약 6개월 만에 40여 기의 발사 차량을 더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거는 확인하기가 불가능 내용입니다.

○강대식 위원 불가능 내용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러나 능력이 향상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목적이 핵 프로그램 저지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그러면 김정은이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전술핵무기 위협까지 했습니다. 김정은의 최근 행보가 북한의 핵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특히 베네수엘라·이란 지휘부 제거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김정은이 오판을 할 수도 있다, 핵이야말로 정말로 자기의 유일한 생존수단이라고 이렇게 오판을 했을 때 더욱 집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러-우 전쟁을 비롯한 역대 세계 3대 전쟁을 보면 미사일이라는 핀포인트 타격이 주효를 이뤘지 핵으로 전쟁하는 나라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월등한 방공 또 공격 무기가,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종의 무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공무기에 있어서는 북한은 평양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확대재생산하는 것도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강대식 위원 북한의 화력이, 타격 훈련 이후 보도된 김정은의 주장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국가안보실은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고 그랬는데 김정은이 하는 말은 ‘전쟁 억제력을 검열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련이고 방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자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김정은인들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강대식 위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김정은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군의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번에 김정은이 ‘평화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켜 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분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낱말은 좀 다르지만 그 뜻을 보면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는 천양지차라고 생각합니다.

○강대식 위원 천양지차라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30초만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예.

○강대식 위원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의 논리를 복사하면서 일체의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장관, 김정은의 군사적 도발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당연하지요.

○강대식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국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란 전쟁에 파급되는 모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전보다 불안정해하는 이 부분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다저렇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피부로 와닿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장관께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은 무형의 사기전력, 정신전력이 가장 앞서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종의 전략적 무기를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세계 4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정보력, 가장 중요한 연합방위태세 또 한미의 작전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안규백 장관님 그리고 이용철 청장님, 지금 미국-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양가감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하면서도 그러면서 K-방산의 가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에 노르웨이에서 1조 3000억 원 규모의 천무 풀패키지 공급계약을 하였고 그리고 2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미-이란 전쟁 상황에서 또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천궁-II의 조기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캐나다와 관련해서도 차세대 잠수함 수출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정 정도 한계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의원외교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노르웨이 천무 수출 과정에서도 노르웨이 의회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백선희 위원 저도 지난해 12월에 노르웨이 외교 일정 중에 노르웨이 전 총리이자 노르웨이의 외교·국방위원인 에르나 솔베르그를 만나서 천무 수출을 위한 의원외교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원외교가 천무 수출 결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방산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을 하셨던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캐나다 잠수함 수출과 관련해서도 독일하고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회를, 의원외교를 잘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대부분의 나라들이 내각제 국가이고 상하 양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회의 힘이 굉장히 큼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방산외교 활동은 기업,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실효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회가 되신다면 국방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좀 피곤하시더라도 방산외교 활동에 좀 더 매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부승찬 위원님께서도 월스트리트저널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타국의 함대는 필요 없다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이 오더라도 현재 전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0년 때처럼 청해부대의 작전 임무 구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파병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에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해적 퇴치 및 안전 항해 지원이라는 기존 청해부대의 파병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오늘 좀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해외 파병 절차와 국회 동의 기준과 관련해서였습니다. 헌법 60조에는 이를 비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해외파병의 기준과 절차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대 단위의 파병은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개인 단위의 파병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국회 동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병은 행정적인 절차,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고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F-16 전투기 서해 상공 출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월 오산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서해 상공 훈련 시행 과정에서, 미국 전투기가 서해 공역까지 비행하면서 중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해 미·중 전투기가 공중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관님, 주한미군 F-16 전투기 비행계획이 사전에 우리 군에도 통보가 됐다고는 하지만 해당 주한미군의 훈련을, 그때 당시 훈련을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주한미군의 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독 훈련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아닌데, F-16……

○백선희 위원 그러나 중국 전투기가 출격했다고 하는 사실만을 봤을 때는 좀 일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 경우는 관습적으로 양국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고위급 군사회담의 비공개 내용을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희 위원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국방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주한미군 서해 훈련 입장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정세를 봤을 때 미중 경쟁 심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한미군 전투기 훈련은 주한미군 전력 운용 범위를 한반도 밖까지 확대하면서 오히려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상황을 높이고 대중과의 긴장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하는 국민적 불안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세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시겠지만 국민적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시는 이런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오산 공군기지로 패트리엇 포대하고 사드 발사 차량이 중동 차출을 위해서 이동한 것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장관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오산 기지까지는 사드 발사 차량이 이동한 것도 사실이고 6대가 이동을 했었고 그중의 1대는 성주로 복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서……

1분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중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백선희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고요. 대통령께서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KAMD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다층 방공망이 뚫릴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저고도 방공망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어트와 그리고 천궁-II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더 큰 우려는 만약에 사드가 차출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부분은 고고도 방어체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세한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유의미한 전개 작전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재삼 드리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는 공조체제와 상호협력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장관님,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3월 10일 날 국무회의에 장관님이 참석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지금 국방부장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방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안보실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국방부장관이 부대를 지휘하고 있고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장관으로서 대통령님하고 늘 소통을 하시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잡고 이렇게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대통령님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세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세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냐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3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주한미군의 일부 방공무기 반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말씀은, 말의 취지는 우리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게 아니에요. 주한미군의 기본적인 역할이 한반도 방위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같은 말을 듣는데 왜 장관님은 그렇게 틀리게 해석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위원장 성일종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무기 반출로 대북 억제에 장애가 생겼느냐 하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강선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사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반출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그것은 장관님의 입장이네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주한 미군의 일부 방공무기 반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미군 자산을 미군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을 토로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연이어서 얘기하신 말씀이 ‘무기 반출로 대북 억제 장애가 생겼느냐 하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자고요. 대북 억제에 장애가 안 생겼고 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드 나가는 데 왜 반대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 논리적인 모순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대통령한테 말씀을 하셨느냐……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 있는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닙니다. 이것은 생방송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방송에 직접 나오신 것, 언론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랬어요. 전혀 아니고 우리 방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왜, 대통령께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의 어떤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고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의 사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진단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게 장관님께서서는 취지가 아니고요, 대통령 한말씀 한말씀은 국가를 대표하는 아주 무겁고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의 입장도 감안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성주에 사드 들어올 때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인체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 16년도 10월 11일 날 ‘사드 배치는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명백히 위협한다’ 그랬어요. 그게 16년도에 말씀하신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느냐? ‘사드 가고 평화 오라’고 그랬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고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와 가지고 대통령 되신 다음에는 방공무기 반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10년 전의……

○위원장 성일종 야당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면……

○국방부장관 안규백 10년 전의 방공무기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무슨 상황이 됩니까? 무슨 상황이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무기체계 발전 속도가……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지금 사드를 대체할 무기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고고도의 방어체계를 갖추 수 있는 무기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저희들이 빨리 전력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그러니까 빨리 전력화시켜야지요. 그런데 현재 없으니 사드 나가는 것을 막아야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위원장 성일종 아니면 먼저 얘기대로 ‘사드 가고 평화 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옛날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주 참외가 그 당시에 3000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6000억이 넘었는데. 농민들의 눈물을 다 흘려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우리 군의……

○박선원 위원 뭘 사과를 해요! 뭘 사과를 해! 성남시장 때하고 대통령 때하고 같아요?

○한기호 위원 왜 중간에 얘기하는 데 껴요, 끼기는?

○박선원 위원 시간이나 똑바로 넣고 해요.

○한기호 위원 또 본성이 드러난다!

○박선원 위원 조용히 해!

○한기호 위원 얘기하는 데 왜 껴요, 끼기는!

○박선원 위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마.

○위원장 성일종 그러니 우리 장관께서 대통령께서 이 사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박선원 위원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세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대통령께 사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현재 우리 무기체계가 개발은 됐지만 현재 우리가 이것을 빨리 전력화를 해야 되는 데 지금 공간적으로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선원 위원 안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 발사대하고 레이더하고 다 있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한기호 위원 똑같은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아프지. 아프니까 그러지 안 아프면 그러겠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기호 위원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박선원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한기호 위원 그러지 말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야. 왜 앞뒤가 달라?

○박선원 위원 다르지. 사람이 다를 수 있지.

○한기호 위원 뭐가 달라, 상황이 다르기는?

○박선원 위원 성남시장일 때하고 대통령일 때하고 다르지. 뭘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사드가 없어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아니라 우리의 억제력도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방의 총책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드가 비면 고고도가 밟니다. 국가는 0.1%의 흠이 있어도 안 되고 방어벽이 무너져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리고 본질적으로 제가 오늘 누차에 걸쳐서 발언했지만 미세한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변화는 없다, 전략무기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큰 변화가 없기는요.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사드가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려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병주 위원** 사드 나간다는 얘기를 어디에 했어요? 거짓 가짜 뉴스를 퍼트려요? 사드 나간다는 얘기 어디 있어?

○**위원장 성일종**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무회의에서 3월 10일 날, 언론에 다 나온 얘기예요. 이것은 다 나온 얘기예요.

○**김병주 위원** 그건 팩트리어트 얘기한 거지 사드 나간다는 얘기 어디 했어요?

○**한기호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를 시정시켜야지.

○**박선원 위원** 뭘 시정해? 대통령이 말씀했는데 왜곡하는 사람이 위원장이지.

○**위원장 성일종** 자, 제가 지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보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위와 관련해서 0.01%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업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고 또 방어와 공격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것은 좀 이따가 하고요.

이상으로 주질의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이 6시를 향하고 있는데 정회를 하고 저녁을 한 이후에 8시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고 합시다.

○**위원장 성일종** 이따가 하세요.

(17시38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장관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부승찬 위원** 제가 안보전략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미국의 안보전략은 기본적으로 세계지도를 참고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중국의 안보전략은 제2도련선, 즉 말하자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안보전략이 수립되겠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한반도는 아무래도 우리의 주된 위협은 북한이기 때문에 한반도 지도를 가지고 안보전략을 상정하는 게 맞지요, 국방전략으로 치면?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기본입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한반도 천동설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부승찬 위원 미국·중국 할 것 없이 전부 한반도를 중심으로 안보전략을 수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도 한반도 중심적 시각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런 한반도 중심적 시각에서 봤을 때 전작권 전환부터 시작해서 자주국방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승찬 위원 그래서 국방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동맹이라는 것은 수단에 불과하지요?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수단이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자산의 이동이라든지, 물론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협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말씀을 못 하실 뿐이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당연하지요.

○부승찬 위원 동맹은 목표가 아니다,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국력에 따라 안보전략의 개념, 안보전략의 스코프(scope) 자체도 변한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선동하고 가짜 뉴스가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KADDEX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KADDEX요?

○부승찬 위원 예, KADDEX, DX KOREA.

○국방부장관 안규백 전시회 말입니까?

○부승찬 위원 예, 전시회.

올 10월에 개최 예정인데요. 계룡대의 장소 대여를 승인해 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아마 육군본부 근무지원단에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승찬 위원 그러면 슬라이드 잠깐 보여 주실게요. 한번 보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면 ‘전시회 후원’ 해서 ‘계룡대’라고 돼 있어요. 육군협회 홈페이지인데 계

룡대로 명시해서 참가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보면 법령상 사실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보면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2024년에 KADEX에 대해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비상활주로를 4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신청을 했고 국방부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작전성 검토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장소가 합당한지도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래서 24년도의 허가는 국유재산법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국방부장관 안규백 금년에는 아직 승인 요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데 KADEX에서는 이렇게 계룡대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주최·후원·주관·장소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사용한 적이 KADEX 전시회를 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비상활주로를 영화 제작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영화 제작 좀 띄워 주실래요?

여기 보면 문의가 있는데 여기서 활주로 촬영만 하겠다 그랬는데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군사시설물로 관리되고 있고 평시에도 상황 발생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지,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군사훈련을 실시 중인데 24년은 4개월을 사용했어요. 이것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복지단에서 했는데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보안서약서를 쓴다든지 이런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보안서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국 노동자들이 군사시설에 들어와서……

1분만 더 주십시오.

군사시설에 들어오고 이것을 촬영하고 이런 행태가 벌어졌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저는 DX KOREA, KADEX 좋다 이거예요. 전시회 하고 우리 방산을 홍보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법과 절차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고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위법한 행위도 보이고요, 훈령과 관련된 위법성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승인을 안 해줬는데 벌써 계룡대라고 확정을, 특정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제가 24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 후원 자체를 DX KOREA가 됐건 KADEX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후원을 아예 일체 하지 마십시오, 국방부나 방사청이나 기타 부서가. 이게 뭐하는 행위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올해는 아직 승인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기 전에 장관님께 오후 답변과 관련해서 한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께서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수백 명이 너무 과도하게 처벌을 받고 있다고 과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어서 모 여당 위원께서 반국가적·반민족적 행위를 한 것이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럴 때 장관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동의하시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장관님 임명되시고 나서 쪽 보면서 결심하시는 모습모습마다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때는 있었지만 오늘의 이 답변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국회 TV를 통해서 방송되는 것을 50만 장병들이 지켜보고 있고 장관님은 그 장병들의 수장입니다. 과연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수백 명의 장교들이 다 반국민적이고 반민족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 동의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어쨌든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엄히 처벌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것 자체를 이렇게 매도해 가면서 칼춤을 추면 안 돼요. 최소한 장관님은 50만 장병의 수장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면 선별적으로 조치를 하되 우리 군의 고유한 전통인 상명하복에 대해서 이게 무너지는 것을 장관은 막아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상관의 지시를 수명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에 합법한 행위를 했을 때 수명하는 것이지요.

○임종득 위원 장관님, 장관님은 50만 장병의 수장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것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장병들의 사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이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고요. 12·3 불법 계엄에 대해서……

○임종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지금 장병들이 다 보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12·3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단순히 버스 타라 해 가지고 탄 게 반국민적이고 반민족적이에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12월 4일 01시 1분에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계엄을 도모하고 서울행 버스를 탑승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종득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장관님이 50만 명의 국군의 통수권자, 수장이라면 정말 피끓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 하면서 답변해야 되고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당연히 가슴 아파 하고……

○임종득 위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보는 사람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임종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월 24일 한미일 공중 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한미 간 이견들이 좀 발생했지요. 대변인 답변이 큰 이슈가 됐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이견이라기보다는요 한미일 훈련과 관련해서 그 시기가 설 어간이었고……

○임종득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답변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거든요. 국방부 대변인의 답변은 공식적인 국방부의 입장입니까, 개인적인 입장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대변인의 답변은 공식적인 입장이지요.

○임종득 위원 당연히 공식적인 입장이지요. 공식 입장인데, 슬라이드 한번 올려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인 대변인의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한미 간의 이견이 있음을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입장 발표와 관련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것은 한미일 훈련이 아닌가 본데요?

○임종득 위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사과 보도와 관련된 질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것은 한미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해……

○임종득 위원 한미일 훈련, 공중 연합 훈련을 이야기했었고 나중에 서해 쪽으로 미국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단독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을 기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한미일 훈련이 아니고요 서해상에 미 전투기가 출격한 것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한미일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돼 가지고 미국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하고 다릅니다. 한미일은 2월 설 어간에 있었고 이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한번 넘겨 주세요.

제가 왜 지금 대변인의 답변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가 하면 국방부나 합참의 실무자들의 공식 입장은 항상 저렇게 나와요. 맞지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한미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장관님은 인식을 하시고 대변인 교육을 제대로 시키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 내용 아시지요, 정동영 통일부장관 내용?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장관님도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에 찬성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9·19 군사 복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이것은 일부 관련 부처와 협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일부 복원과 관련된 부분에 비행금지구역도 포함이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비행금지구역이 9·19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육상, 해상, 공중 중에서 공중의 비행 부분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게 9·19가 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대비태세에, 공중 정찰에 얼마나 장애가 있었는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그래도 찬성한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으로서 찬성한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것은 한반도의, 한반도는……

○임종득 위원 찬성한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평화의 힘과 대화의 어떤 축으로서 지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찬성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임종득 위원 찬성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작전의 범위가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복원은 찬성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관계부처 간에 이루어졌다,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보다는 충분하게 조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지요.

○임종득 위원 소관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소관 주무부처는 국방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종득 위원 그런데 왜 통일부장관이 지금 이러고 있고 거기에 끌려갑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지요. 그것은 통일부장관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임종득 위원 국방부장관이, 선제적으로 되는 것은 되는 거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끌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설명을 누가 했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재재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이어서 하시

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까. 이어 가겠습니까, 다시.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전에 잠깐만요.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들은 야당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장관한테 언성도 높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흥분하지 말고 하세요, 부들부들 떨지 말고.

○위원장 성일종 좀 들으세요. 부들부들 떨든 안 떨든 위원들의 자유인데……

○박선원 위원 왜 장관님한테 그래요. 50만 우리 군의 수장이라고 그러면서 왜 걸핏하면 덜덜덜 떨면서 흥분하고 그래요?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여당 위원이 되면 좀……

○박선원 위원 장관님한테 점잖게 하세요, 점잖게.

○위원장 성일종 그 점잖은 걸 유지해 달라는 거예요, 여당 위원들이 조금 너그럽게 하고 끼어들지 말고.

○박선원 위원 점잖지 않았어요. 위원장의 점잖음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흥분해 가지고 장관님한테 저렇게 하는 것은 점잖지 않은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여러분들은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박선원 위원 저는 떨지 않아요. 왜 흥분해 가지고 덜덜덜 떨고 그렇게 해요?

○위원장 성일종 떠는 것도 위원이 알아서 떨 테니 정말 회의에 좀……

○박선원 위원 장관님한테 점잖게 하세요.

○위원장 성일종 병사들이, 우리 장병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란이 반민족적·반민주적 행위지, 뭘 잘했다고요? 뗏뗏하면 무기징역 받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장관님한테 부르르 떠는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그것하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의하는 데 끼어들지 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말갈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위원장 성일종 그저 뭐 하다가 말이야 막히면 그저 내란, 내란 이야기하는데 내란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질의 시간에 충분히.

○박선원 위원 아까 군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여러분 질의 시간에, 그리고 야당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지.

○박선원 위원 우리 장관님한테 정도껏 해야지.

○위원장 성일종 장관한테 야당 위원이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질타도 할 수 있지.

○박선원 위원 말이 되는 걸 질타를 해야지요. 내란이 반민족·반민주적이지, 반인권적인 거고.

○위원장 성일종 예의 좀 지키시고, 질의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끼어들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박선원 위원 무기징역 받았는데 뭘……

○위원장 성일종 간사님, 협조를 좀 해 주세요.

○박선원 위원 협조할게요.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지난번에 이상희 장관님이 타계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도 거기 조문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다녀왔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상희 장관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국방 태세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보여 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핵 없는 상태에서 북한 위협에 끌려 다니며 트럼프에게 돈을 바치기보다 미군 철수를 감수하고 핵무장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미국 없이도 가능한 안보 체제를 준비해야 된다, 1단계는 NPT 10조에 의거 합법적 NPT 탈퇴를 하고 2단계는 한 미원자력협정을 폐기해서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해야 된다, 3단계는 3NO 정책으로서 실험하지 않고 핵무장 밝히지 않고 제재받지 않는—이게 이스라엘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분이 수명이 얼마큼 안 남은 상태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 아픈 것 다 알고 마지막 유언같이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을 갖춘 나라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NPT를 탈퇴하고 IAEA의 사찰을 거부하면 외로운 고도의 섬에 사는 나라에, 북한 같은 고립된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CNI 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서 우리가 지금 안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나라고 다만 핵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괴력 미사일이랄지 현무-5·6·7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많은 양을 보유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호 위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훈련과 관련해서 임종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본의 자위대 총감부에 가신 적 있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다녀왔습니다.

○한기호 위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지금 언론 자료나 이것을 보니까 ‘과거는 잊고 미래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억 안 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과거는 잊고 미래를 준비하자.

○한기호 위원 이게 신문 제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훈련한 것 때문에, 미국과 훈련하는 과정에서, 아까 임종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한미일 훈련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1월 달부터 제안을 하지요, 한미일. 그래서 이게 2월 달 가서 사과에 대한 여부를 기다, 아니다 하고 이것 때문에 입씨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그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한미일 관련해서?

○한기호 위원 됐습니다.

또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현 이재명 정부까지 한미일 연합 훈련은 그러면 어떻게 한 건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2월 22일이 일본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날도 훈련을 했어요, 한미일이 같이. 저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우리 하고 미국하고 훈련한 게 아니라 한미일, 일본이 끼어서 그날도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군사적인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본을 넣었다, 안 넣었다 하는 게 우선 장관님께서 일본 가서 얘기하신 것과도 안 맞고 과거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얘기한 것과도 안 맞아요.

다음 화면 또 보실까요.

이게 2022년도인데 이것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한번 보시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다,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가 아닌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 주는 행위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게 이어 오지는 않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일 간에는 가깝고도 먼 나라이면서 역사적 과거사가 있는 아주 뿌리 깊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한 날에 한미일 훈련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역제안을 한 겁니다, 날짜를 조정을 해 보자.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가서 과거는 잊고 미래로 가자 해 났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한 슬라이드에 보신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얘기한 그 내용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그러니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날에 훈련을……

○한기호 위원 그게 지금 하루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루이틀 일본이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더라도 우리 정서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조정해 보자고 역제안을 한 것이지요.

○한기호 위원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한미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사일 방어 훈련을 2023년도 2월 22일 날 같이 했더니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미사일 방어 훈련 그것은 또 다른 것이지요.

○한기호 위원 일본하고 같이 한미일이 같이 훈련을 했더니가요, 그날도.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는 정보 교류와 미사일 훈련은 또 다른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한기호 위원 그래서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결국 등지고서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장관님, 우리 대통령님께서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이슈를 직접 많이 언급하고 규제 완화라든지 공급 확대라든지 세제 조정 방안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시장은 좀 출렁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영상자료를 보며)

전번에 태릉CC 있잖아요. 서울의 상징적인 군 부지인 태릉CC하고, 장관님 지역구라고 알고 있는데 핵심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카드로 꺼내 들었는데, 장관님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혹시 국토부라든지 재경부라든지 국방부와 공식적인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우리 국방부 시설국하고 또 총리실하고 이 문제를 계속 상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강대식 위원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도 8·4 공급 대책에 포함되었다가 교통 인프라 문제라든지 아니면 세계문화유산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좌초된 사업 아니었습니까? 장관께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현재 상황 변화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크게 달라진 바는 없는데, 아마 유네스코 영향평가를 다 받고 나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유네스코에서 유산에 대한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나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 만약에 유네스코에서 또다시 제동을 건다고 하면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발표해 놓고 그냥 전번처럼 좌초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로는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또다시 어떤 제약 때문에 그냥 공급 카드라는 정치적 목적만 사용하고 그냥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대식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 아주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으로 판단하고 동의한 겁니까,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장관 안규백 동의, 부동의를 떠나서 여러 가지 문화재 보존과 주택공급 사이의 어떤 완충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택공급과 반면에 확대 이 문제가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장관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각 부처와 상의할 때 장관께서 알고 계시는 모든 상식과 또 전번에 좌초된 이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지, 이랬다가 결국 또 나중에 안 돼 가지고 그냥 좌초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기조에 따라 대통령실의 별도 지시나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국방부의 독립적인 검토로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강대식 위원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독립적 결정보다는 범부처 차원에서 국토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 총리실과 국토부 그다음 국방부 유관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서 차후에 군 복지 문제라든지 군 전력 운용 문제라든지 국방연구원의 연구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국방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주택공급 문제도 있지만 지방소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가. KIDA 문제 같은 경우 그런 문제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대식 위원 태릉CC 정도 같으면 지방소멸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요, 태릉CC 말고요 KIDA.

○강대식 위원 KIDA.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저는 숫자 맞추기 카드놀이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국익을 위하고 모든 어떤 규제 사항이라든지 환경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맞아떨어졌을 때 부동산정책을 시행해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어떤 환경적으로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 자리는 안 되고 또 다

른 자리로 옮겨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상당히 국민들의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장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순응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대답을 장관으로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잘 알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했는데……

○위원장 성일종 죄송합니다. 하자마자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고 지금 의사 진행발언 2분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사실 오늘 저는 방첩사령관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첩사에서 만든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진상을 알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 힘에서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다음번에는 방첩사령관을 국방위에 출석시켜서 윤석열 방첩사에서 만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꼭 여기 국방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일종 위원장님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지난 오후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한미군 전력 전환과 관련해서 일부 언급한 내용 중에 사드라는 ‘사’ 자도 얘기 안 했는데 사드를 언급했다 하면서 가짜뉴스를 이렇게 얘기하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중히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실 주한미군 전력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사드에 대한 ‘사’ 자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의사진행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12·3 불법계엄은 내란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방위원들이 내란을 옹호하는 걸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규백 장관은 사실 50만 수장으로서는 내란을 청산하고 군을, 군 기강을 완전히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란의 옷깃만 스쳐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버스를 탔다는 이유로 징계가 잘못됐다는니 이렇게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더 이상 내란을 옹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현한테 군을 무너뜨린 얘기를 해야 될 걸 안규백 장관한테 얘기하면 적반하장 격이지요, 실제.

5분 쓰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윤석열하고 김용현한테 가서 화를 내야지, 우리 군을 무너뜨린 게 누구입니까? 윤석열과 김용현 아닙니까? 이렇게 화낼 대상은 안규백 장관이 아니라 김용현, 윤석열 이 내란세력이지요. 그래서 정확히 번지수를 찾아야 될 것 같고.

성일종 위원장님 사회 똑바로 봐 주세요. 내란을 옹호하는 그 어떤 국방위원도 제재해 주세요. 50만 대군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란을 옹호해서 되겠습니까?

안규백 장관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은 바로 해야 군 기강이 서는 겁니다. 그 의지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란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겁니다. 그걸 명

확히 우리 장병들에게 인식시키고 교육시키고 해야 됩니다. 완전히 신념화될 때까지, 국방위가 열릴 때마다 앞으로 계속해야만 신념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5·16 군사정변과 79년도의 12·12, 80년도 5·18 민주화운동 등 방첩사와 깊게 관여된 일련의 내란 상황이 아직까지 한 번도 청산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그런 DNA가 살아나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번 만큼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신상필벌에 의한 군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은 50만 수장으로서는 내란을 옹호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일침을 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건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내란을 옹호하는 것은 그대로 뒤서는 안 됩니다. 50만 장병이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승찬 위원도 언급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의 진의 좀 알고 싶어서요. ‘호르무즈에서 도움이 필요 없다. 군함 파견 요청, 각국 반응을 살피려고 한 목적이었다’라고 했는데 아마 프랑스를 겨냥해서 한 걸로 보이는데, 혹시 국방부에서 이것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제가 분석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인데, 특유의 스타일이지요. 원래 파병 같은 것 하려면 밑에서부터 실무 협의를 하고 장관급 협의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먼저 SNS로 내지르고 난 다음에 하니까 미국 내에서도 부처 간 조율이 안 된 것 같고요. 또 해당 국하고도 전혀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대단히 혼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가의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의 가장 중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존망지추가 달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살피고 살피고 또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 답변이 좀 필요해서요. 조현 외교부장관께서는 공식 비공식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애매하게 답변을 해 버렸어요. 원래 외교부장관은 물론 외교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마치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제안은 미국의 전쟁부에서 안 온 겁니까, 아니면 외교부에는 왔는데 국방부는 모르는 겁니까? 이것은 좀 정확히 정부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정부 입장은 공식적으로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정부 전체 입장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드론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요청했는데 지금 드론의 위협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공격하는 드론을 만들어서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전력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란전을 분석하면서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미 그런 개념에 착수해서 가성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예컨대 1000만 원짜리 드론을 억대의 요격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성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산 대드론 체계를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병무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예산소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동원훈련장에 병력이 없어서 총기 손질을 못 한다고 육군이 총 닦는 기계를 도입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병무청에 사회복지요원 보충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육군하고 논의된 사항 없지 않습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제가……

○**강선영 위원** 국정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요원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제도는 1995년도에 당시 현역 소요보다 입영 대상자가 많을 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역의 잉여 자원이 사회적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보충역 제도인데, 문제는 현재는 현역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그래서 보충역도 지금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선영 위원** 보충역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회복지요원을 말씀드립니다.

PPT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대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지휘·통제부대로부터 학교기관까지 다양하게 나뉘져 있습니다. 그중에 전투근무지원이라는 부대는 주로 군수지원부대를 얘기하는데요. 현재 사회복지요원이 하는 일을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거나 민원 처리, 공공질서 유지, 환자 보조, 학습도우미 이런 걸 하는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투근무지원부대에서 충분히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역이 부족하니까. 동의하십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예, 동의합니다.

○**강선영 위원** 또 이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있지 않다 보니까 병무청에서 병역법 제43조에 의거해서 근무실태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한번 PPT 보십시오.

보시면 지난해 기준으로 사회복지요원 4만 600명 중에 2200명이 복무규정 위반했고요 복무 이탈과 무단지각,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복무요원 수는 1만 7000명이 감소했는데,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5만 7000명에서 4만 명으로 감소했는데 규정 위반자는 2557명에서 2196명, 퍼센티지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 송민호가 440일간 복무하면서 복무일의 4분의 1, 102일 동안 무단결근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이 과연 현역으로 복무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그다음에 현역병 부족 문제를 이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문제랑 같이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병무청장 홍소영** 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검토해 주세요.

○**병무청장 홍소영**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방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번 정부 안에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3개 있는 것 아시지요, 방사청장님?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강선영 위원**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의 군사적 능력인데요. IOC, FOC, FMC 이것 말고 두 번째, 한반도에 있는 북한의 핵위협이 어떠한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3축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강선영 위원** 국방부의 업무보고에 보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21.3% 증액했다고 하는데, 제가 방사청 업무보고를 봤는데 사실은 방사청에서 이 부분의 전력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방사청에서는 굉장히 수사적인, R&D 뭐 이렇게 수사적인 것 했는데 정부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국형 3축체계 발전 언제 시킬 겁니까?

PPT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 보세요.

이것은 지난번에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한국형 3축체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6차 핵실험이 됐고요. 600mm 방사포 엇그저께 실험했는데 지금 한국형 방산체계 전력화 시기 육해공군 보시면요 킬체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30년대 초반입니다, 30년 초반이 아니고 30년대 초반. 해군 한국형구축함 KDDX 30년대 초반, 함대지탄도유도탄 30년대 초반, 공군 KF-21 이제 전력화 시작했지요, 전자전기. 그다음에 KAMD, 장사정포 요격체계 20년대 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30년대에 돼서 이루어질 것인데,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고 국방부장관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방사청장님은 저것 무기체계 전력화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복안 좀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력화까지 이루어지는 획득의 제반 단계가 개념 세운다고 곧바로 몇 년 만에 전력화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개념 세운다고 바로 안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대통령하고 안규백 장관님한테 하세요. 개념 세운다고 안 되고 30년대 중반·후반·초반에 되기로 한 게 어떻게 이게 완성이 돼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기반한, 세 가지 조건이 어떻게 달성되니까?

그러면 북한의 핵위협을 감퇴시켜서 북한이 핵위협을 중단하겠다, 비핵화를 선언하든

지 아니면 방사포 개발 못 하게 하든지 그런 협의가 없는 가운데 안 된다고 하시면 이 정부 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장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자동총기는 조금 전에 병무청장님한테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번에 국방부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것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검토도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그것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현역이 부족한데 사회복지요원을 그런 곳이라도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지 총기 예산을 여쭙어본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리고 조건 2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에 있어서는 한미가 조건으로 내세운 게 다 있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무기체계는 조건 충족의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강선영 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이것은 좀 다른 질문인데요.

장관님, 용현과 핵심 중의 한 사람이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박선원 위원 정재관은 작년에 군인공제회와 전혀 관계없는 KAI 강구영 사장과 함께 KAI 로비를 위해서 언론사도 같이 방문하고 이런 사람인데요. 내란 주범 김용현의 육사 38기 동기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호가호위하던 사람입니다.

정재관 씨가 윤석열 정권 초기 경호처 직제에 없는 유령조직 국민소통공간추진단 단장으로 임명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박선원 위원 그리고 그 과정이 모두 불법이었다고 하는 것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나온 것도 알고 계시지요?

PPT 올려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대통령실—용산이지요—집들이 행사 및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의혹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가 있었고 그 감사를 해 보니까 김용현 처장이 정재관을 국민소통공간추진단장으로 임명했는데 60세가 넘어서 단장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장을 시켜서 경호처 직무 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임무를 부여한 것이지요. 이것은 정부조직법 위반이다라고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란 소굴인 대통령실 용산 집들이를 주도한 정재관은 심지어 집들이 예산이 없다고 하는 국토부 관계자에게 ‘그냥 해라’ 하며 갑질을 했고 그런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박선원 위원 또 정재관은 경호처를 그만둔 이후에 윤석열 정권 실세로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에, 용산구청장이 희생자를 보살피고 구호하는 것은 내팽개치고 정재관에게 ‘용산에 가니까 삼각지에 진보단체 피켓이 있어서 그걸 다 철거했습니다’라고 그 보고를 하거든요, 정재관에게. 아무런 직책도 없는 정재관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용산구청장이 159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보다 피켓 철거했다 이런 내용을 정재관에게 보고하고 이런 게 감사원에 그대로 걸렸어요, 사람 죽은 순간 이런 짓 하고 있었다고. 이태원 참사 순간에 이런 짓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계속 뒀야 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민주권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또 하자가 발견된다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박선원 위원 이 사람이, 사실 군인공제회 뜯어 보면 굉장히 비리성 적자, 부실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사업을 다 종료시켜 버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총액에서 이삼조 날아가야 되는데 부실 처리를 안 해서 지금 군인공제회의 부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도 안 하고……

요즘 뭐라고 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김용현도 친구였는데 안규백 장관하고도 친구다 이런 말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부실이 발생해 있는 것 하나도 털어 내지도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군인공제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원 감사에 이렇게 지적된 인물이란 말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감찰을 즉각 시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희 전 장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법률적으로는 NPT 10조에서 그야말로 핵공격을 받기 직전 상황, 국가의 위기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주권적 사안으로서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미 간에는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놓고 물밑 대화를 시작했고 거기에서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적어도 20% 이하의 저농축에 대해서는 상호 이해가 오고 간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핵 주권을, 상업용으로 그리고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 주권이 있고 무기로서 추진할 수 있는 핵 주권이 있는데 무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익스텐디드 디터런스(extended deterrence)라고 하는 확장 억지력으로서 서로 한미 간에 고도의 핵우산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술 그리고 상업용,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은 원자력협정에서 우라늄 저농축을 허용하는, 물론 한미 간의 투명한 연구와 활동을 전제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고 있음으로써 과도한 부담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우리 안보는 증강시키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우리 정부 입장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안규백 장관님, 지금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주한미군 전력 운용은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방어태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이뤄야 되고 이를 위해서 한국형 3축체계를 기반으로 한 우리 스스로의 한반도 방어태세를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군의 역량을 보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만약 미측에서 파병 요청이 온다면 분명히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우선 파병에 대한 필요성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전시 상황의 파병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 그리고 외교에 직결되는 중대한 국가행위인 만큼 결코 정부의 행정적 결단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진보성향 야당에서는 파병 반대 결의안을 내고 있습니다. 파병은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명심하셔서 꼭 국회 검증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충돌 사태에 대해 한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난 11일 미군의 표적 설정 오류로 인해서 이란의 미나브 초등학교를 폭격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75명의 어린아이들, 선생님들이 사망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참혹한 인명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야기하는 무력충돌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사국들의 즉각적인 종전과 대화를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평화 정착과 정세 안정을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외교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파병과 관련해서 파병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 사항입니다.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국민적 동의도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한 두 가지만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 날 미군이 서해상에서 단독 공중훈련을 하면서 중국하고 대치 상황이 있었잖

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때 장관님하고 합참의장이 브런슨 사령관하고 통화를 하셨고, 그렇지요? 맞지요? 그 이후에 통화하셨지요? 브런슨 사령관하고 장관님하고 합참의장이 우리한테 통보 안 한 것에 대해서 통화를 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통화를 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쪽에서 항의를 했고 우리 쪽에서 항의한 내용은 왜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가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가지고 항의를 했고 브런슨 사령관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일단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장관님하고 합참의장하고 브런슨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MBC에 23일 날 보도됩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미 사령관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이렇게 방송이 나가요. 그러니까 24일 날, 그것도 저녁 10시에 주한미군에서 ‘사과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반박 성명이 나가요. 반박 성명이 나갔고 그때 그러면서 주한미군사령관 이야기는 ‘우리는 통보했다. 실무자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 실무자가 장관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짚어 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에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미 간에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국방 사령탑하고 이것을 하면서 이게 한미 간에 굉장한 문제 인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또 어떤 문제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냐. 그러면 우리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장관 안규백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을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성일종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MBC가 이 방송을 내보냈을 때 왜 국방부는 MBC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안 했는가가 첫 번째 상당히 의문이 들고.

두 번째, 주한미군사령관이 24일 10시에 얘기했듯이 ‘실무진한테 통보를 했는데 실무진이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실무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중요한 사항을 받았으면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한 그 실무진은 반드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장관님이 대답을 해 주실 게 첫 번째, MBC에 왜 항의를 안 했는가. 그리고 장관의 통화 내용을 실무진 누군가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흘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장관하고 브런슨 사령관하고 통화한 것을 어떻게 언론한테 흘리냐는 거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브런슨 사령관 얘기대로 실무진한테 통보를 했으면 그 실무진, 장관님한테 보고 안 한 사람은 누구냐.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장님의 팩트체크에서 질문의 내용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

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여기서 군사 고위급 비공개 회담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문제 제기의 인식 자체가 약간의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만이 진실이고 진실은 여러 가지 녹음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MBC에 항의를 왜 안 했느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항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장관님의 장점은 뭐냐. 야당 하실 때도 비교적 아주 합리성을 가졌다는 거지요. 한미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의 그 어떤 위원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위원장도 느끼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지금 여기의 문제는 뭐냐. 누가 이 통화한 사실을 MBC에 쫓아내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그 부분에……

○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이것 잘못 준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간의 고위급 군사회담을 여기서 확인해 주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누설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감사를 시켜 봤습니다. 어느 선에서, 어느 계선에서 이것이 흘러 나갔는가에 대해서는 보안감사를 시켜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진한테 통보를 했지요? 그러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얘기를 한 겁니까. 24일 밤 10시에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 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장님, 그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위원장 성일종 누구한테는 연락 왔을 것 아니에요? 주한미군사령관이 거짓말을 한 거냐는 얘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것은 위원장의 의문 사항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해명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셔야지.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미 고위급 비공개 회담을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고 미측도 보고 있을 텐데 여기서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성일종 내용을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실무자한테 통보를 했느냐. 그리고 왔으면 그 실무자는 왜 보고를 안 했는지, 통화하신 내용이나 그 내용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보안 사항이 아니에요. 왜? 브런슨 미 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실무진한테 통보를 했다고 하니 그러면 미군 측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직무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이것 굉장히 큰 문제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브런슨 사령관이나 미국 전쟁부나 수시 때때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만나고 식사하고 통화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익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 못 하시겠다면 그 부분도 또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장님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대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2차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장관님, 혹시 김진형 예비역 제독의 저서 ‘대한민국의 군대를 말한다’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분의 저서까지 제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여기에 군복의 무게가 나오는데요, ‘군복은 군인이 마지막 순간에 입고 떠나는 수의와 다를 바 없다. 군복이야말로 군인들만이 입는 고귀한 옷이다’. 계엄에 대해서 이것을 유추하면 책임의 무게가 저울에 달 수 없다는 겁니다. 티끌이 하나 묻어도 그것은 명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16 군사쿠데타나 5·17 계엄이나…… 여기서 우리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군바리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군바리, 직업을 천하게 부르는 게 ‘바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지요. 찢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티끌 하나라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 군은 영원히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가슴이 미어져요. 어떻게 파면하고 징계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업보입니다. 군복의 무게입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위사업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형 정찰무인기의 개발과 관련해서 국과연 대상 감사 지시하셨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부승찬 위원 왜 하셨습니까? 기술료 사용 집행과 관련 부적절과 관련된…… 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기술료 사용 집행은 소장의 승인 사항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부승찬 위원 소장의 승인 사항이고, 그리고 이 무인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22년 12월 29일 국과연에 갔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100대, 1000대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그 인과관계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여기에 특정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이 과정 속에 저항을 했

거든요, ‘이것 예산 사용 부적절하다’. 당시에 이종섭 장관한테 아주 혼도 많이 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무인기, 평양 중국산 무인기와 관련돼서 유일하게 저항한 사례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검에 가서 외환과 관련된 것, 일반이적과 관련돼서 진상규명에 크게 기여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물론 부당한 압박을 받았고 이것에 따라서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그냥 뒷선이 아닌 아래에서 꼬리 자르기가 될 것 같다는 우려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뒷선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감사면 안 된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저항한 것, 특검에서 일반이적 행위로 기소한 것, 여기에 모 인원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고 그 뒷선까지 명확히 해야 형평성에 맞고 그리고 방사청에서 감사를 못 했을 때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한다든지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불편부당하지 않게, 그냥 여기 실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는 감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지금 재보충질의까지 4차 질의를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3차 질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시면서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번 질의를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위원님이 더 있으시면 좀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님, 현 정부의 안보 분야 참모들 중에 자주파와 동맹파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들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언제나 한 어머니의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 아롱이·다롱이 다른데……

○임종득 위원 이것 자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어요. 장관님은 어느 쪽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

○임종득 위원 슬라이드 한번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성락 안보실장님이 25년 9월 달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이지요? 갈등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 입장을 헛갈려 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입장이 서로 간에 부처, 그러니까 통일부 입장하고 국방부 입장이 다르듯이 입장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나 그러면서 같이 공통분모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이 내용은 보셨습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이야기인데 이것 한발 더 나갔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 정도가 아니고, ‘자주파가 있으면 앞으로 나가고 동맹과가 지근거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측근 개혁이 필요하다’, 국방부장관을 겨냥해 가지고 대통령을 바보가 되게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참모 간에 논의 과정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격론을 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안이 결정되면 거기에 하나로 단일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수면 밖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나오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결국은 주변 국가들을 헛갈리게 만들기도 하고 협상 과정이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경계작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한 2년째 계속 경계작전 개념 변경을 이야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장관님과 합참의장님, 육군총장님도 다 동의를 하고 있고 경계병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PMC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옳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반영된 것을 보니까 경계작전 민간위탁 사업이 25년도 전반기·후반기에 다 안 났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27~31 중기계획, 27년도 예산 소요에 태울 수가 있는데 이것 돼도 좀 늦어요. 이것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 분야에 관련해서 한기호 위원님도 여러 번 몇 년 전부터 세미나도 하시고 또 토론도 많이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오늘 질의들이 많았는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전력 운용에 관해서 문제가 돼서 본 의원실에서 대면 설명,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올려 주시지요.

이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당연히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민감한 전력 운용에 관한 것이니까,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넘겨 주시지요.

그리고 국방부나 주한미군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까. 장관님도 지금 안보불안 확산 방지라든가 한미동맹의 민감성 부분에서 오늘 답변 과정에서도 수차례 지금 양해해 달라고 말씀하신 게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장.

그런데 대통령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국방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직접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 말씀은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한미관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체가 실무자로부터 장관님까지 일관되게,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당국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아니면 외교적 수사로서 이렇게 하는데 명확하게 이견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방위원장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전에 했던 말과 달라지는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국방 분야의 참모로서 좀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1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아니, 제가 그 차이, 입장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견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던 입장하고 실무진이나 장관님이 하는 스탠스하고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백신 중에 MMR 백신,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홍역, 볼거리, 풍진 세 가지에 대한 백신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는 질병관리청에서 계약한 이 접종 백신이 1만 6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얼마에 계약했는지 아십니까? 2만 1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업체가 똑같은 물건을 질병관리청에 공급하는 것하고 국방부에 공급하는 것에 달라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양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소 입소 장병 전원에게 접종한다고 방침을 가졌었는데 이것을 변경합니다. 변경하는데 기존의 계획은 5만 3000명을 해야 돼요, 전부 다 해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2차 접종이력이 없는 대상자만 선별해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1113명밖에 안 돼요. 결국은 97.9%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문제없나요? 왜 이렇게 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금액이지 아직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금년 1월 달이니까 인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계약을 하지 않았습시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접종을 하나요, 못 하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가를 먼저 전문가들의 판단을 들어 보고 할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병력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신병은 계속 들어오지. 이게 마냥 기다리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2차 접종을 안 한 인원에 대해서는 미리 하는 이런 차별적 접근을 아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자 한번 데리고서 정확하게 따져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97.9%가 계획했던 인원에서 접종을 안 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다음은 1월 달 수당을 3월 10일 날 지급하기로 했는데 다 지급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다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예?

○국방부장관 안규백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예산 담당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한기호 위원 아니, 뒤에 실무자 일어나 보세요.

100% 이상 없이 지급했습니까? 제가 알고 묻는 거예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3월 달에는 월급받고 수당을 3월 10일 날 통일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한기호 위원 마이크가 안 나와요.

○위원장 성일종 시간 충분히 고려해서 드리겠습니다. 잠깐 끊어 주세요.

실장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위원님, 2월 달까지 월급은 10일 날, 수당은 25일 날 지급하던 것을 3월 달에는 3월 10일 날 월급하고 수당을 다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어떤 것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1월 달 수당을 3월 10일까지 지급한다고 공문을 하달했잖아요. 그리고 3월 10일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한기호 위원 지났으니까 다 지급했냐 하고 제가 묻는 것이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한기호 위원 국방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일단 다 지급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급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남의 얘기 해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군인들 알기를 뭐 같이 생각하니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어떻게 국방부에서 대답을 그렇게 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위원님……

○한기호 위원 군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제가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한기호 위원 지금 지급을 하는데 뭐라고 공문을 했습니까? ‘착오지급을 감소시킨다’, ‘보수의 이해도를 제고시킨다’. 제가 이 공문을 읽어 보면서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3월 10일 날 지급을 하면 착오지급 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2월 25일 날 지급하면 착오되는 게 더 많습니까?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맞습니다.

○한기호 위원 왜 많습니까?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왜냐하면 수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월 달까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면 2월 달에 결산을 해서 2월 25일 날 지급하는데……

○한기호 위원 아니, 1월 달 것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월 달이면……

○한기호 위원 1월 달이면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을 2월 말에 지급하는 것과 3월 10일 날 지급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월 31일까지 시간외수당을 했으면 그것을 2월 25일 날 결산해서 줍니다. 25일의 시간차가 있는데 25일의 시간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당이라는 것은 실적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수당이 있는데 실적수당 같은 것은 다 실적을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출을 갔다든지 그다음에 자리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25일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로, 10일을 넘기면 15일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있기 때문에 그 착오가 훨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해라’, 이것 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편의 아닙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라고 하지.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역자가 발생해요. 그러면 1월 말까지 줘야 될 돈을 2월 달 전역하는 사람은 언제 줘요? 전역한 후 집으로 보내 주나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아닙니다. 다 지급합니다.

○한기호 위원 언제 주느냐고요. 3월 10일 날 준다면. 그런데 2월 말로 전역한 사람은 언제 줘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전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결산을 해서 그 친구들은 별도로, 사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군인들을 행정편의에 희생을 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 위원님, 장관이 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부처 중에서 국방부가 유일하게 기본급과 수당을 따로 주는 유일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병들하고 초급간부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자기 월급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을 떠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부사관 월급이 287만 원이고 또 GP 근무수당이 150만 원 하면 약 43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원들은 10명이면 11명이 자기 월급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쳐서 주다 보니까 정확히 ‘제 월급이 287만 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몇 명 봤습니다. 왜냐하면 존재감과 자긍심이 없어요. 월급이 병사보다 적다는 부사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합쳐서 시행하다 보니까 자기 월급에 대한 자부심,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게 월등히 낮더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떤 인원들은 따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가족한테 안 주고, 그래서 그것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월급과 수당을 합쳤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 과거에 주던 것에서 이렇게 늦춰서 줌으로써, 전방에서 군인 가족들이 전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렇게 늦게 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정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면 과거에 국회의원 하실 때 소령의 정년을 연장시키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 연장시키기 전과 후 대위에서 소령 진급자가 몇 명 줄었냐면 33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원 보고를 제가 또 받았어요. 아까도 그것을 가지고 제가 따진 것인데 소령을 또 줄였어요. 중령을 또 줄였어요. 그러면 대위에서 소령 진급하고 소령에서 중령 진급하는 공식이 또 줄어들어요. 실무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자꾸 이렇게 줄여서 군대의 매력을 없애고 진급 공석을 자꾸 줄이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고 군무원으로 바꿨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한기호 위원** 아니, 따져 보세요, 제가 보고서를 다 봤으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 위원님, 그것은 신원식 장관 때 기본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원식 장관 때. 왜냐하면 창끝부대의 사단이나 군단 부사관들을 다 대령급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군으로 좀 바뀌야 되겠다, 그것을 좀 야당에서 협조를 해 달라. 그때 그것 기억 안 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기호 위원** 그런데 지금 후방에 근무하는 특수병과나 기행병과에 있는 소령·중령 인원들을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래서 기재부한테 설득과 이해를 엄청 구해서 군무원 고위직을 놔두고 이 창끝부대에다 장군들은 다 뺐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창끝부대가 아니고 병과별로 인원이 관리가 되거든.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급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지.

○위원장 성일종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다시 한번 따져 보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장관님, 너무 절박하고 너무 절실해서 늘 내가 상임위 열릴 때마다 장관님한테 떼쓰다시피 이야기를.....

○국방부장관 안규백 대구공항이요?

○강대식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대구 내려오셔서 충분히 검토,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을 강조한 것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2월에 대통령께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기 보면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현황도 함께 보고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전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대구시-기재부 간 정부지원 방안 협의 중 이전사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한 세 달이 지났는데 지원 방안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결과가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위원님이 누구보다도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저도 2013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요. 지금 재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재경부 측에다가 대구시 입장에서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군공항이전국장이 지금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서 우리 국장한테—박승홍 국장인데—특별히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특히나 장관께서는 또 국회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만 보면 대구공항이 얼굴에 써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고맙습니다.

예결위에서 부대의견 단 것도 보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지난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대양여 원칙하에 통합신공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장관님께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공항 이전 사업이 기부대양여가 대원칙이나.....

○강대식 위원 맞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것은 기부대양여 원칙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강구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

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크잖아요. 또 기부재산에 비해서 너무 사업비가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면 수십 퍼센트씩 자꾸 단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510만 시도민들은 정말 이전 사업이 지속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항상 의구심을 가지는 시도민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시도민들한테는 지금 확신을 심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주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사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광주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문제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원래 대구·광주·수원인데, 대구공항이 이전 공항의 가장 롤모델이었습니다.

○강대식 위원 맞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약간 지지부진해서, 광주공항이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속도를 내도 16개 단계 중에 우리는 13단계까지 왔는데 광주는 이제 한 단계, 두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3단계에 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고개만 넘으면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 열여섯 번째가 국방부 군 공항을 넘겨주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개만 넘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절박하고 절실하게 장관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못지않게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대식 위원 예,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안에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장관님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국민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데가 중동·이란 지역이라고 보고요. 또 그것이 우리 한반도 안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주한미군 전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난주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지요. 이란·중동이 얼마나 전환이 됐느냐, 지금 장관님께서도 미세조정 정도고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중령 시절에 2003년도에 미-이라크전이 발발했지요, 2003년 3월 20일에. 그래서 그때 일주일 지나서 바로 제가 미 중부사 한국군 대표 장교로 가서 이라크전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우리가 한미동맹인데도 불구하고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철저히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것의 보안을 유지합니다. 지금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왜냐하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전력 중에 예를 든다면 패트리엇 탄약이 얼마 나갔다, 또는 발사대가 나갔다 하면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중동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미동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파병을 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할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대중동 관계, 대이란 관계 또 앞으로 방산수출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방부에서도 한미 간에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알고 있더라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이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안심시키기 위해서 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연합방위태세는 촛보의 흔들림도 없고 한 치의 물 썰 틈이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 좀 이해를 시키는 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 일부는 이것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이번에 실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잘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합참차장 나와 있나요?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예.

○**김병주 위원** 해파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세부 현황에 있어서. 아니면 장관님이 아시면 장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제가. 말씀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지금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 사령부가 중부사령부인데 중부사령부에도 연락장교가 지금 나가 있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합참차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다국적군에 6명, 바레인 등 6개 지역 있는데 중부사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우리가 전체 나가 있는 개인 파병이 약 구십몇 명 될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지금 바레인에 있는 5함대 있잖아요. 이 5함대에는 얼마나 나가 있지요?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5함대에는 6명 나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5함대에는 6명 나가 있나요?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예, 그렇습니다. 중부사에는 2명 나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중부사 2명, 중부사 여하에 있는 5함대에 6명 나가 있다는 말이지요?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지역에, 여기 6명은 아마 청해부대가 임무

수행하는데 정보 공유 때문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나갔고, 지금 안전 문제는 문제 없나요?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예, 이 인원들은……

○김병주 위원 마이크를 써서 하세요, 아니면 이쪽에 나와서.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정확히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위원님, 관심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인원들은 저희들이 그 해당 부대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에 숙소를 다 정해서 현재 그 안에 대피해서 임무 수행 중입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지금 이 인원들의 안전이 저는 제일 걱정되는데 특히 5함대에 나가 있는 인원, 전쟁의 중심에 있잖아요.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미군이 지금 미국에서 파병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요구할 확률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종전이 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하는 데는 한 이삼 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청해부대의 임무가 우리 상선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청해부대에 나가 있는 대조영함이나 각종 나가는 데는 대드론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장비를 구비하는 데 아까 한 한 달 걸린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여러 가지 철저히 준비하려면 한 달이 더 걸리고 한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체계 있잖아요. 무기체계도 방사청과 같이 신경을 써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종전되고 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분명히 알아서 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선 보호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합참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차장 권대원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맞고 저희들이 파병 가는 것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장관님, 아까 질의드린 것에 연결해서.

그렇다면 미측과 합의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COTP, 조건을 건 전작권 전환은 그 당시의 조건에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조건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조건이 완화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3축체계를 한미 간에 협의해 가지고 조절한 게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조건 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3축체계의 전력화 방향은 그러면 3축체계를 포기하고 조건 2의 충족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합의가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 이행 합의는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합의가 없는데 어떻게 3축체계,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이 30년대 중반에 가야 이루어지는데, 그 조건인데 어떻게 그것이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무기체계는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그 3축체계, 아까 제가 제시한 그 무기체계가 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은 뭘로 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핵·미사일 대응은 KAMD로 하는 것이지요.

○강선영 위원 3축체계의 두 번째가 KAMD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인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3축체계 안에 세 가지가 킬체인, KAMD, KMPR이고요. 그것이 완성되려면 30년대 중반이고요. 이번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하겠다는 것은 30년 이전에 하겠다고, 아까 유용원 위원이 질의했을 때 28년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조건 2가 충족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작권 전환이 됩니까?

그다음에 조건 3,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역내 안보환경,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북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정포 계속 만들고 방사포 만들고 그다음에 3월 12일 날 북한의 평양하고 중국의 단둥 간에 철도도 연결되고 3월 30일 날에는 항공기도 재개하고 북중러가 중 전송절 행사도 참석하고 러시아에 파병도 하고 이러한 역내 안보환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그 조건에 대한 네 가지는요 탐지·결심·방어·격퇴지 않습니까?

○강선영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 종이쪽지 주신 분이 잘 이해를 못 하네요, 제가 말하는 것을.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 2는 지금 KAMD는 그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강선영 위원 KAMD가 아니라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선영 위원 KAMD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형 MD 체제가 KAMD인데 그게 3축체계 안에 안 들어간다고요? 정책실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장관님 말씀이 틀립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정책실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정책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잘

못했으니까 설명 필요 없고요.

지금 이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금년도 3월 5일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의회를 위한 배경과 현안이라는 한미동맹 관련한 보고서가 나온 것 장관님 들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선영 위원 지금 한국군 주도하에 전작권이 됐을 때 지휘체계 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연합사령관은 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그다음에 유엔사를 겸하는데 전시가 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중에서 특히 유엔사령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유엔사령관은 연합 다국적군에 대한 증원이 됐을 때 이들을 조정·통제하고요. 그다음에 정전 체계 관리, 전시 회원국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데 이 임무를 과연 지금 현재 연합사령관이 겸하지 않고 유엔군사령관 단독으로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연합사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 합의된 사항에 준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영 위원 미래연합사의 구성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쓰리 캡 중의 하나, CFC의 사령관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주한미군사령관, 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의 역할 중에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에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을 그대로 해 줄 것인지 그다음에 위기 시에 다국적군이 파병됐을 때 그들에 대한, 정전 체제 이후에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다국적군에 대한 통제를, 동일한 전장에서 지휘체계를 단일화시켜서 통제해 줄 것인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유엔군사령관은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강선영 위원 지금 유엔군사령관직을 유지하는데요.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면 그 인원이 그 일을 본인이 지휘관일 때와 지휘관이 아닐 때와 똑같이 수행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임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강선영 위원 예.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항을 아마 장관님이 제가 드린 의도를 명확히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정책실장님이랑 국방부에 계신 분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다음에는 장관님이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3축체계가 뭔지도 정확히 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우리 군이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군사력에 대해서 대비 체제를 갖는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 체제로서 3축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연합전력을 이야기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연합방위입니다. 확장 억제고 연합방위 아닙니까, CNI고? 그렇기 때문에……

○강선영 위원 반미, 반미……

○박선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강선영 위원 반미, 반미를 그렇게 외치면서 무슨 연합방위입니까?

○박선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잠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강선영 위원 반미, 반미 맨날 떠들면서.

○박선원 위원 누가 반미야! 어디서 버릇없이, 그런 소리를 하면 돼요, 남이 질문하고 있는데?

○강선영 위원 당신이 위원장한테 손가락질하면서 했는데 누구한테 버릇없다는 거야!

○박선원 위원 뭐야, 당신이 나한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또 그런 색깔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위원장 성일종 조용히 하시고……

○박선원 위원 내가 질문할 테니까 다시 시간 넣어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빨리 질의하세요.

○박선원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한미가 한국 혼자 해라 미국 혼자 해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미 연합방위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력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CNI에 의해서……

○박선원 위원 확장억제력의 범위 안에는 미 본토에 있는 미니트맨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핵잠수함의 정례 순환배치 과정에서 작전에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하고는 절대적으로 선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유사시 적이 우리를 침탈할 때 우리의 방위를 우리 주도적으로 하고 그것에 미국이 지원을 하되, 특히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으로 대비하고 나머지 지상전은 우리 중심으로 치열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장치로서 전작권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런 식으로 무슨 한두 가지 조건이나 한두 가지 무기체제의 도입의 연도 가지고 전작권의 전환의 시기나 구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국민들에게 잘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전작권 전환의 KAMD에 대해서는 미측과 한측이 여러 가지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합의된 사항에 무기체제가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선원 위원 자꾸 헛갈리는 것이, 전작권이 넘어오면 대북억제 혼자 하느냐? 그게 아

됩니다. 미국이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작권 전환이 우리 군에 넘어온다고 그래서 북한과 혼자 싸우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연합전력으로 함께 싸운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군이 스스로 전쟁을 핵심적으로 책임 있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조기에 갖춰라 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래서 CNI가 있는 겁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습니다.

추가로 1분만 주십시오.

그리고 미사일이라든지 패트리어트 중에서 아주 일부가 나간 것에 대해서 전략적 유연성 자꾸 운운하는데요. 그것은 전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전략적 유연성의 범위는 동북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 공군이 발진해서 대만 때리고 대만이 전쟁했을 때 중국 푸젠성을 때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가 아닌 다른 동북아의 전선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오히려 동북아의 전체적인 다른 지역에서의 군사 위기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주한미군은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트리어트가 됐든 아니면 지상군이 됐든 공군력이 됐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유럽으로 가거나 미 본토로 가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에서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범위가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2006년에 한미 간의 정상외교가 사인한 그 메모랜덤(memorandum)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패트리어트가 설령 얼마가 어디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미군이 전 세계적으로 안보를 관리하고 위기를 대응함에 있어서 자국 군이 어떤 위협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자산의 일부를 가져다가 미군의 위협을 해소하겠다는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고 아쉽지만 미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감으로써 미군의 군사태세가 동북아 아닌 다른 지역에서 유지됨으로써 차후에 더욱 강해진 미국의 전력의 동북아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군이 일시적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으며 이것은 꼭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는 찬성하지 않지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추측과 가정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세한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1분 더 드릴까요?

○박선원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충분히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제가 오늘 마지막이네요.

장관님 아시다시피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30년 동안 인간의 삶과 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국방위원으로 여기 있다 보니까 군 장병들이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K-방산의 호황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 부의 성장에 환호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산업이고 또 공공 영역의 성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무겁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저는 국방과 사회정책 시리즈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군과 사회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 달에는 K-방산은 ESG를 특징으로 하자 그래서 K-방산 기업의 ESG 원년, 2026년을 원년으로 삼자라고 하는 주제로 했었고, 2월에는 군인 자살 예방을 통해서 한 명의 장병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자라고 하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3월 달에, 오늘 오전에는요 군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군 가족들하고 또 모범적인 주거단지의 현장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자살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군 장병 생명 보호와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12월 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국방부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했고 지금은 국방부에서 장관님께서 사무관을 파견하셔서 감사하게도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5년 동안 평균 한 70명의 장병들이 자살을 하는데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가 저의 깊은 고민이고요. 그런데 지금 대책들을 보니까 주로 심리상담 쪽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원인들을 보면 군이라고 하는 직업적 특성의 스트레스, 조직문화, 복무환경, 대인관계, 가족구조,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부처에서 하고 있는 부대관리훈령에 있는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별하고 관리하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살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2월에 토론회를 하면서 간부의 계급별로 자살 요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관장교 같은 경우에는 업무하고 조직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살 요인이고요. 초급 간부는 대인관계가 자살 요인이고 그 중간에 있는 중견 간부는 업무와 대인관계 이 두 가지가 모두 자살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선별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자살을 크게 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구조적……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관련된 것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만 있고 말씀드렸듯이

상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어떤 조직구조 문제 등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에는 밀리터리 소셜 워커(military social worker)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영국에는 아미 웰페어 서비스(army welfare service)라고 하는 것이 있고 캐나다는 군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군 사회복지가 없습니다. 이 자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복지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군, 경찰 또 소방 업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군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해군참모총장께서는 해군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연구용역까지 맡주를 하셨는데요.

장관님께서서는 이렇게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추진본부가 있으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런 군 사회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방사청장님, 제가 ESG에 관심이 너무도 많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군 자살 감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약 32% 이상, 24년 대비 25년도에 32% 정도 자살률을 감소시켰고요. 자살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용 어느 조직과 집단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도 역시 사회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사회를 떠나서 군이 존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선희 위원 군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K-방산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윤리적인 관심, ESG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추진 방안으로는 저희가 상생협력지수를 지금 개발 중인데 그 상생협력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ESG 요소를 녹여 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백선희 위원 협력업체하고 상생과 더불어서 사회 공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백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장관님, 그 업무 플로우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 전체 업무 플로우에 대

해서 한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그 산하기관들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을 다 체크를, 국방부 직할되어 있는 데는 국방부가 예를 들어서 방첩사다 그러면 방첩사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국방부장관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움직입니까, 지금?

○국방부장관 안규백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방사청장님, 지금 산하기관이 몇 개나 되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저희는 세 개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어디어디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ADD, 기품원, 국방과학기술연구소 그렇게 세 개……

○위원장 성일종 거기 기관들도 예를 들어서 어디 기관에 간다 그러면 방사청에 다 실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움직이나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아주 세부적인 활동까지를 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해외출장을 가거나 하는 큰 움직임은 다 여기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그래서 그 기관들도 다 독자성이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간섭의 월(wall)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거나 상당히 중요한, 꼭 알아야 될 것 아니면 일상적인 것들은 다 일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층층이하 계층을 만들어 놓고 보고체계를 만들면, 방사청 자체가 다 과학기관이잖아요. 그 과학자한테 너무 버든(burden)이 많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장관님, 제가 볼 때는 사실 ADD 같은 경우를 북한의 미사일이나 군 체계를 하는 그런 기관하고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TV 보니까 성공했다고 김정은이가 과학자를 업어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ADD나 이러한 기관에 있는 우리 훌륭한 과학자들이 큰 성공했을 때 대통령이 불러서 밥을 한번 주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장관께서 불러서 밥 한번 주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래서는 이게 안 된다. 그러니 저는 ADD를 비롯해서 이런 걸 2차관제를 만들든지 해서 직접 보고하고 사기를 북돋우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 분들 관리감독 안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자율권을 많이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ADD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의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연구개발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2차관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1차관은 3군과 작전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국방과 관련된 R&D를 비롯해서 방사청 이런 것들은 2차관제로 해야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옛날에도 한번 검토하셨던 것 같은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국민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우리 방산

이잖아요.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제일 잘나가는 게 방사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너무, 지금 3단까지 내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과 국방부 등 소관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의견들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부승찬 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이 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67항까지 62건의 법률안, 1건의 결의안 및 1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법안소위 직접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4916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서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간사 협의를 거쳐서 법안소위로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부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홍소영 병무청장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7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대식 강선영 김병주 박선원 백선희 부승찬 성일종 유용원 임종득 정청래
한기호 황명선 황 희

○청가 위원(2인)

김민석 김병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 안규백
차관보 원종대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기획관리관 오성식
계획예산관직무대리 배인영
국방개혁기획관 차원준
정책기획관 우경석
국제정책관 이광석
방위정책관 김대봉
인사기획관 이인구
예비전력정책관직무대리 김기영
보건복지관 성기욱
군사시설국장 천승현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홍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전준범
전력정책국장직무대리 이성은
국방정보화국장 염주성
군수관리국장 이갑수
법무관리관직무대리 이정민
감사관직무대리 김신숙
군인권개선추진단장직무대리 김미성
국방보좌관직무대리 박동걸
주한미군이전사업단
단장직무대리 김주열
합동참모본부
차장 권대원
육군본부
참모차장 최장식
해군본부
참모차장직무대리 이구성
공군본부
참모차장 박기완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김현
병무청
청장 홍소영
기획조정관 김인환
병역자원국장 정재숙
입영동원국장 최정효
사회복무국장 서승일

방위사업청

청장 이용철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정재준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기영

기획조정관 한경수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정책조정담당관 홍수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건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신상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8)

11월 25일 회부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5)

11월 28일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5)

이상 3건 12월 3일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0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5)

이상 3건 12월 4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6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3)

이상 8건 12월 5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2)

12월 8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2)

이상 3건 12월 10일 회부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2)

이상 2건 12월 11일 회부됨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4)

이상 3건 12월 12일 회부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8)

이상 2건 12월 17일 회부됨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5)

이상 3건 12월 19일 회부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1)

12월 22일 회부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1)

12월 23일 회부됨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2025. 12. 9. 이철규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15037)

12월 30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7)

12월 31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0)

이상 2건 2026년 1월 2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4)

1월 6일 회부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7)

1월 15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1)

1월 16일 회부됨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2026. 1. 19.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2)

1월 20일 회부됨

국방인공지능법안

(2026. 1. 27. 유용원 의원·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5)

1월 28일 회부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7)

1월 29일 회부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5)

2월 2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3)

2월 4일 회부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0)

2월 5일 회부됨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9.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8)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2026. 2. 9.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9)

이상 2건 2월 10일 회부됨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2)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3)

이상 2건 2월 11일 회부됨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0)

2월 12일 회부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2)

이상 4건 2월 13일 회부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5)

이상 2건 2월 19일 회부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0)

이상 2건 2월 25일 회부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9)

이상 2건 2월 26일 회부됨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8)

이상 6건 2월 27일 회부됨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1)

3월 6일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9)

이상 2건 3월 1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4)

이상 2건 1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7)

12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4)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7)

1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등 26인 발의)(의안번호 2215082)

12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엄태영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4)

12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6)

이상 2건 12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3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5)

2026년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2)

1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1)

이상 2건 1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1)

1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1. 30.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5)

이상 2건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이상 2건 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이상 2건 2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5)

2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9)

2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9)

이상 2건 2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故 박진수 중위 사망사건」 관련 군의 구조적 책임 규명 및 순직 재분류·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2025. 11. 28. 이은순 외 1인으로부터 부승찬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52)

11월 28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894호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12. 9.
	제35925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12. 23.
	제3592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12. 24.
	제35923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 1. 2.
	제36045호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정		2026. 1. 22.
	제36051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		
	제36067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166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6. 2. 5.
	제3616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 3. 6.
	제3616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 3. 11.
	제3592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방위사업청)	2025. 12. 23.
	제36091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 2. 26.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국방부령	제1193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12. 23.
	제1194호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196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 12. 30.
	제1197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 1. 2.
	제1203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 1. 28.
	제120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 2. 19.
	제1207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 3. 9.
	제1193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방위사업청)	2025. 12. 23.
	제1201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2026. 1. 30.
	제120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고서 제출

헌법소원심판회부 통지문 송부

(2025. 11. 26. 헌법재판소장 제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부대개편사업 집행실적 보고

(2025. 12. 1. 국방부장관 제출)

2025년도 군인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2차)

(2025. 12. 10. 국방부장관 제출)

헌법소원심판회부 통지문 송부

(2025. 12. 29. 헌법재판소장 제출)

법률 공포 통지

(2025. 12. 31. 정부 제출)

군인연금기금 자산운용지침 제출

(2026. 1. 2. 국방부장관 제출)

2025년 4분기 군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제출

(2026. 1. 6. 국방부장관 제출)

2025년 행정기관위원회 운영현황 제출(국방부)

(2026. 1. 7. 국방부장관 제출)

2026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제출

(2026. 1. 9. 방위사업청장 제출)

2025년도 4분기 예산 이용·전용·이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제출

(2026. 1. 15. 병무청장 제출)

2025년도 4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및 50억원 이상 세부사업간 조정 명세서 제출

(2026. 1. 27. 방위사업청장 제출)

2026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 송부

(2026. 1. 28. 정부 제출)

헌법소원심판회부 통지문 송부

(2026. 1. 30. 헌법재판소장 제출)

2025년도 4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내역 제출

(2026. 1. 30. 국방부장관 제출)

헌법소원심판결정서(2026. 1. 29.) 송부

(2026. 2. 2. 헌법재판소장 제출)

법률 공포 통지

(2026. 2. 4. 정부 제출)

2025년도 군인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3차) 제출

(2026. 2. 12. 국방부장관 제출)

헌법소원심판회부 통지문 송부

(2026. 2. 27. 헌법재판소장 제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회 보고 자료 제출

(2026. 2. 27. 방위사업청장 제출)

법률 공포 통지

(2026. 3. 4. 정부 제출)

헌법소원심판결정서(2026. 2. 26.) 송부

(2026. 3. 6. 헌법재판소장 제출)

법률 공포 통지

(2026. 3. 11. 정부 제출)